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성북선잠박물관
SEONJAM MUSEUM

성북선잠박물관
2019년 인문학 강좌

선잠아카데미

조선왕실의 생활사

성북구

선잠아카데미

조선왕실의 생활사

발 행 인 이승로 성북구청장

총　　괄 한형주 성북선잠박물관장

기　　획 성북선잠박물관

편　　집 오민주, 전서령, 한지수, 홍성현, 지다인

발 행 처 성북선잠박물관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96
Tel 02-744-0025, Fax 02-744-0023
museum.sb.go.kr

비매품

© 2019 성북선잠박물관

* 이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성북선잠박물관 및 저작자의 허가없이 무단 전제는 불가합니다.

목차

1회 10. 02 (수) 왕이란 무엇인가?
한형주 _성북선잠박물관장

2회 10. 09 (수) 명주저고리에서 적의를 입기까지
이민주 _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3회 10. 16 (수) 답사 - 종묘
한형주 _성북선잠박물관장

4회 10. 23 (수) 영조 계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임혜련 _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

5회 10. 30 (수) 왕자와 공주의 살림나기
정수환 _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10월 2일

왕이란 무엇인가?

한형주 _성북선잠박물관장

왕이란 무엇인가?

한형주 _성북선잠박물관장

1. '왕'이란 무엇인가?

* 대통령과 다른 '왕'만의 독특한 무엇이 있다.

(1) 개념

- 권력의 근거와 행사
  - 원리상 천명(代天者)과 혈연(宗法)에 기반한 절대 권력자
  - 권력의 제한-법적(經國大典)인 제한, 당위론적 조종성헌(祖宗成憲) 존중
    그러나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현실적 재제 불가능 → 심할 경우 반정, 폐위
- 국정 운영의 주관자
  - 정치, 군사, 외교상 최고의 결정권자
  - 법(경국대전)과 관료기구를 통한 국정 운영
  - 주요 정책 결정, 사형주의 처결 직접 담당
- 『시경(詩經)』의 「소아(小雅)」 북산(北山)편에 나오는 '보천지하 막비왕토　솔토지빈 막비왕신(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 조선시대에 왕권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왕의 권한이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한 조항이 없음
  - 왕조의 최고 권력자로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 세속적 권력을 지님
  - 조선시대에 왕의 명령을 '수교(受敎)'라고 하였는데, 15세기에 이들 수교들 가운데 영구히 지켜야할 것들을 모아 만든 통일법전이 『경국대전』

(2) 칭호

* 각하라는 칭호.
  - 묘호 : 3년 상을 마치고 종묘에 봉안할 때의 칭호
  - 시호 : 선왕이 사망했을 때 명에서 내려주거나 조정에서 올리는 이름
  - 존호 : 생전에 왕에게 올리는 칭호

태조

'태조강헌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의 성은 이씨(李氏)요, 휘(諱)는 단(旦)이요, 자(字)는 군진(君晉)이다'라고 시작한다.

여기서 '태조'는 묘호, '강헌'은 명에서 내려준 시호, '지인 ~ 대왕'는 존호

세조

세조혜장승천체도열문영무지덕융공성신명예흠숙인효대왕(世祖惠莊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

'혜장'은 명나라의 천자가 내려준 시호, '승천체도열문영무'는 계유정난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의 공덕을 기려 1457년에 올린 존호, '지덕융공성신명예흠숙인효'는 신하들이 올린 시호

선조

선조소경정륜입극성덕홍렬지성대의격천희운현문의무성예달효대왕(宣祖昭敬定倫立極盛德洪烈至誠大義格天熙運顯文懿武聖睿達孝大王)

'선조'는 묘호, '소경'은 명나라에서 내려준 시호, '정륜입극성덕홍렬'은 1590년에 올린 존호, '지성대의격천희운'은 1604년에 올린 존호, '현문의무성예달효'는 신하들이 올린 시호

(3) 자존의식

- 이조(李朝) : 조선과 이조를 같이 씀(일제시대의 용어가 아님)
- 적자(赤子) : 백성들을 이르는 말
- 선조(宣祖)의 자존의식 : 국왕을 국가보다 더 중사 여기는 모습

2. 즉위

(1) 유형

- 개창조(開創祖)
  - 국가의 중대한 내우외환을 극복하여 비상한 인물임을 증명하여 권위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신료와 백성의 추대를 받아 즉위하는 유형
  - 고려의 태조가 반정의 형태속에서 추대되었다면 조선의 태조는 양위(讓位)의 형태로 추대됨
- 사위(嗣位)
  - 선왕이 사망한 후 왕위계승권자가 왕위에 오르는 방식. 전위(傳位). 일상적인 방법
  - 사위 방식은 선왕의 자손 혹은 종친으로서의 혈통적 지위를 바탕으로 왕위 계승권자로 지명되어 권위와 정통성 확보
- 적장자 혹은 적장손인 경우
  - 이상적 형태. 왕비의 적장자(적장손)가 원자(원손) → 세자(세손) → 왕
  - 이런 유형은 생각보다 많지 않음
  -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경종, 정조(세손), 순조, 헌종(세손)
- 선왕의 차자 혹은 후궁소생인 경우
  - 광해군, 효종, 영조
  - 국왕의 정통성 시비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함
- 선왕과 부자(조손)간이 아닌 경우
  - 성종, 명종, 선조, 철종, 고종
  - 즉위과정에서 선왕과 부자간을 상정하여 계통상 하자가 없음을 드러냄(선왕 부묘 시 축문에 효자를 칭함)
  - 대비의 수렴청정의 과정을 거침
  - 친정 이후 친부를 추존(종묘에서 친부를 백부〈伯父〉로 칭함)
- 선위(선위, 양위)
  - 요순(堯舜), 순우(舜禹)간의 고사에서 보듯이 이상적인 왕위계승으로 인식

  - 왕위계승의 형태는 사위와 유사하나 국왕 생존에 시행됨
  - 자의던 타의던 선왕이 지정한 왕자나 종친이 즉위. 대부분 비상적인 상황에 시행됨
  - 정종, 태종, 세종, 세조, 예종, 순종 등이 포함
  - 태종, 세조는 명분상 양위이나 실제로는 반정에 가까움
  - 세종(택현:擇賢명분), 예종(세조 :중병)
  - 정통성은 혈연과 택현擇賢 등에서 찾음
- 반정
  - 전왕을 몰아내고 힘으로 새 왕위에 즉위한 경우
  - 반란의 범주와 유사하며, 창업의 경우와 유사성을 보임
  - 정통성은 전왕 바로 앞의 왕의 혈통을 이음
  - 중종과 인조

(2) 즉위 과정

- 국왕의 즉위의례는 유형별로 다름. 선왕의 사망 시기 및 사망 유무 등에서 다른 형태를 보임
  일반적인 사위嗣位를 기준으로 하면 선왕 사망 후 신왕이 상주로서 성복成服하는 의례를 마친 뒤에 새 국왕이 되는 즉위의례를 시행
  『국조오례의』에서 국왕즉위는 가례(嘉禮)가 아닌 흉례(상례)조에 기재되어 국상의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강조
- 봉유교(奉遺敎) (수보受寶)
  - 선왕을 모신 빈전에 나가 선왕의 남긴 유명에 따라 대보(大寶)를 받는 과정
  - 신왕의 칭호
  - 신왕이 즉위 의례를 거행하기 전까지 세자 혹은 사왕(嗣王)이라고 칭호
  - 유교를 받들고 대보를 전달받은 의례를 거친 뒤에 전하(殿下)로 호칭, 어좌에 나가 국왕 지위를 확보
  - 그러나 현종, 경종, 영조는 유교를 받들고 대보를 전달받은 뒤에도 사왕, 세자, 왕세제 등으로 불리다가 어좌(御座)에 나가 앉은 뒤부터 상(上) 또는 왕(王)으로 호칭
  - 정조와 순조는 즉위의례 시작 때부터 왕으로 호칭됨

• 대보(大寶)는 모든 국왕이 전달받음. 그러나 선왕의 즉위명령을 담은 유교(遺敎)는 받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왕세제, 왕세손의 경우
  - 선왕이 후사가 없는 경우-성종, 철종, 고종
• 즉위 의식 거행
  - 궁궐안의 정전에서 즉위 의식 거행
• 즉위의식 거행 시기
  - 개국, 선위, 반정에 의한 왕들은 대보를 받은 당일이나 다음날 사이에 즉위 의례 거행
  - 사위된 왕들은 사망 후 5일 후 성복일(成服日)에 즉위의식 거행
    ⇒ 상주(喪主)로서의 역할 중요
• 즉위장소
  - 대부분 정궁의 정전에서 시행함
  - 경복궁 근정전, 창경궁 인정전에서 시행
• 즉위 시 복장
  - 건국 초 : 강사포, 원유관
  - 문종 이후 : 면복
  - 세조, 중종 : 곤룡포, 익선관(준비가 되지 못해서)
• 수하(受賀) 및 반교(頒敎)
  - 신료들의 하례를 받고 즉위교서를 반포. 내용은 죄수 사면령을 비롯한 신왕의 각오 국가정책의 대강 등
  - 개창, 선위, 반정의 경우 1단계인 봉유교(奉遺敎)의 단계의 구체적인 사항이 다름

3. 권력행사

(1) 권위 창출

- 환구제 :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제단
- 종묘제 : 자신의 선조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 의장 : 조선전기의 경우 3000명 가까운 인원이 동원

(2) 절대 권력자

• 인사권 장악-이조·병조의 인사권을 왕이 막음. 4품 이상은 왕의 직권으로 임명. 5품 이하만 왕이 대간의 간쟁을 받아 조정
• 군사권 장악
  - 군사권은 강무의 시행이나 대열이 비상시적인 제도가 있고, 군사정벌을 시행하여 국가의 위세를 보여줌.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은 조선전기에만 시행되었던 것으로 조선후기에는 시행되지 못했음. 조선중기에 임진·병자호란을 맞이한 것은 이러한 사실과 연결되어있음
  - 1419(세종 1)년 11월 강무에는 12,000명이 동원되었는데, 이중 갑사, 시위패 등의 군사가 3,000명인 반면 구군은 9,000명에 이르렀음
  - 대열
  - 군사정벌 : 대마도 정벌, 야인정벌
  - 5군영의 군사권

4. 왕도정치 구현자

• 천견론(天譴論)
  - 가뭄대책. 기우제
  - 감선
• 농사의 시범
  - 선농단과 선잠단
• 여제 시행
• 미행
• 구언(求言) / 능행정치

5. 왕의 독주 견제장치

- 관념적 견제
  - 조회(朝會)
- 서경(署經)권 행사
  - 고려시대 : 1품부터 9품까지의 전 관료들에게 시행. 왕권의 상대적 약화현상
  -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5품 이하의 관원 임명 시에 서경권을 행사함
- 3사의 언론-사헌부, 사간원, 홍무관의 기관
- 사관의 직필(直筆)
- 붕당의 견제(산림의 존재)

10월 9일

조선 왕비의 복식

명주저고리에서 적의를 입기까지

이민주 _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 조선 왕비의 복식 -
명주 저고리에서 적의를 입기까지

이민주 _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선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빈(冊嬪) 또는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同牢)의 육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간택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육례의 가례를 치르고 난 후에는 왕실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조현례를 비롯해 백관들로부터 하례도 받아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왕세자빈 또는 왕비가 되는데 이때 비로소 왕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단연 복식이다. 또한 각각의 의례에 맞춰 어떤 복식을 입을 것인지 또 머리는 어떻게 꾸미고 치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본 강좌에서는 순종이 된 왕세자 척의 가례를 통해 왕세자빈의 복식을 확인하고 왕비의 복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순종이 왕세자 시절 왕세자빈을 맞이할 때의 복식을 기록한 왕실발기가 수십 건 남아 있어 당시 가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다.

1. 예비 의례

순종은 왕세자 척(坧)으로 고종(1852~1919)과 명성황후(1851~1895)와의 사이에서 1874년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왕세자 척의 혼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881년(고종 18) 11월 16일 7세에서 11세까지의 처자들에게 금혼령이 내려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 『(순종)왕세자가례도감의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678.

이후 다음 해인 1882년 1월 15일 초간택을 치르고, 2월 22일 대전과 중궁전을 비롯하여 대왕대비, 왕대비에게 조현례를 치르는 것으로써 가례의 전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순종 가례의 일정을 타임 테이블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1882년 왕세자 가례 거행일지

1월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巽時[2]:初揀擇			午時:再揀擇	各房始役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敎命篆文 二字入		巽時:三揀擇	聘財 玉印篆文 入	別宮禮物 세자궁 법복과 의대 빈궁 법복과 의대
2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납채, 납징, 고기 1·2차예행연습	납채, 납징, 고기 3차 예행연습 -죽책문초도서입	손시:납채	본방예물	정친예물	본방예물	오시:납징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손시:고기	책빈, 초계, 친영 1·2차 예행연습		빈수책, 친영 1·2차 예행연습 교명문 초도서입		빈수책, 친영 내습의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책빈, 초계, 친영 3차 예행연습	-죽책문작첩해서 들임 -반차도 내입 -동뢰연, 조현례 1·2차 예행연습	각방 필역 -오시:교명, 죽책, 옥인 봉과	교명, 죽책, 옥인 배진 내입 -동뢰연, 조현례 3차 예행연습	교명, 책인, 명의대 내출 오시:책빈	동뢰연 기명 내입	동뢰연 기명 배설 -중희당 -손시:초계후 친영 -오시:동뢰연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을시:진하반교 손시:대전·중궁전 조현례 정시:대왕대비전 조현례 미시:왕대비전 조현례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의례에 해당하는 육례에 앞서 치러지는 간택을 예비의

2) 손시(巽時)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의 시간이다.

례라 하고 육례를 치른 후 왕실 어른들께 인사를 올리는 조현례를 후속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의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각각의 의례에 따른 복식과 함께 치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야 한다. 장서각에 소장된 왕실발기는 이들 의례복식을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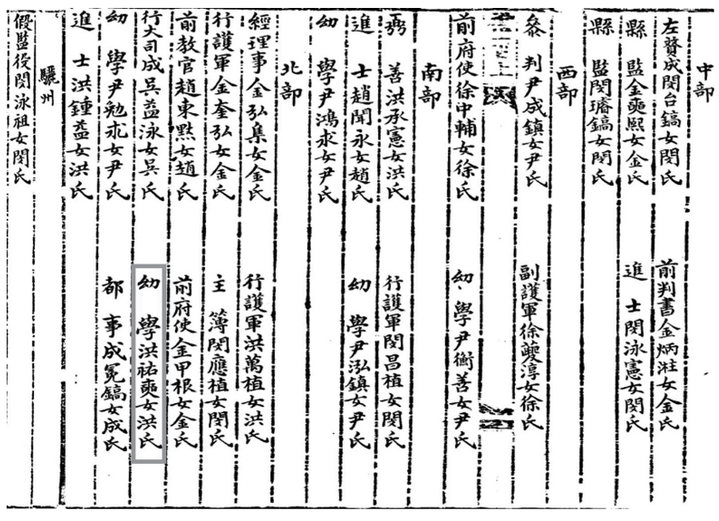
이에 본 강좌에서는 각각의 의례에 따른 복식과 치장을 왕실발기를 통해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1) 간택단자

초간택에 올린 간택단자는 중부5건, 서부 4건, 남부 5건, 북부 11건, 여주 1건 모두 26건이다. 그 중에서 '초간택'이라고 기록된 발기는 〈洪祐奭家 壬午 初揀擇時〉이지만 〈임오정월 가례시 간택처자 의차〉와 〈임오 가례시 숑현김참판딕니참판딕 의츠 불긔〉 등이 초간택과 관련된 발기자료에 해당한다.

다음의 〈자료 1〉은 최종적으로 초간택에 올라 온 간택처자의 명단으로 그 중 유학 홍우석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1〉『(순종) 왕세자 가례등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2) 초간택

이제 본격적으로 초간택에 궁궐에 들어 올 때 간택처자들이 입었을 복식을 확인해 보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초간택에는 각자의 집에서 장만한 복식을 입고 들어 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3] 그것은 혜경궁 홍씨가 쓴『읍혈록』에서 극히 빈곤하여 의상을 해 입을 길이 없어 치마감은 선형(先兄) 혼수에 쓸 것으로 하고 옷 안을 넣을 것이 없어 저고리 안의 낡은 안을 넣어 입히시고 노력하셨다는 기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닉 몸이 간틱의 쎄이니 션비긔오셔는 「남행의 ᄌᆞ식을 간틱의 참예치 아니ᄒᆞ미 히로오미 업슬 거시니 단ᄌᆞ를 말고져」 하시ᄃᆡ 션친긔오셔 ᄒᆞ사ᄃᆡ 「신ᄌᆞ의 도리되야 어이 긔망ᄒᆞ리요」하시고 부득이ᄒᆞ야 단ᄌᆞ를 ᄒᆞ시니 긋ᄃᆡ 집이 ᄌᆡ상의 집이로ᄃᆡ 극히 빈곤ᄒᆞ야 의상을 ᄒᆞ야 입을 길이 업ᄉᆞ니 치마ᄎᆞᄂᆞᆫ 션형 혼슈의 쓸거ᄉᆞ로 ᄒᆞ고 옷 안을 너흘 거시 업셔 져고리 안을 날근 안을 너허 입히시고 근노ᄒᆞ시니 긋ᄶᅦ 쳥빈ᄒᆞᆫ 일 싱각ᄒᆞ면 닉 왕고긔오셔 슈령방빅을 지ᄂᆡ시고 공경으로 겨오셧건 마는 쳥념ᄒᆞ시와 가계가 극빈ᄒᆞᆫ 고로 우리 어머님 근로ᄒᆞ오시던 일이 눈예 버럿더라[4]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여도 재상까지 지냈다는 집에서 치마저고리 감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검소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간택처자들이 궁궐에 들어 올 때는 명주나 모시[紬苧]를 넘지 못하도록 하라[5]는 전교가 있었으므로 과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택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예쁘게 꾸미고 궁에 들어가고자 했음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다시 간택처자들의 복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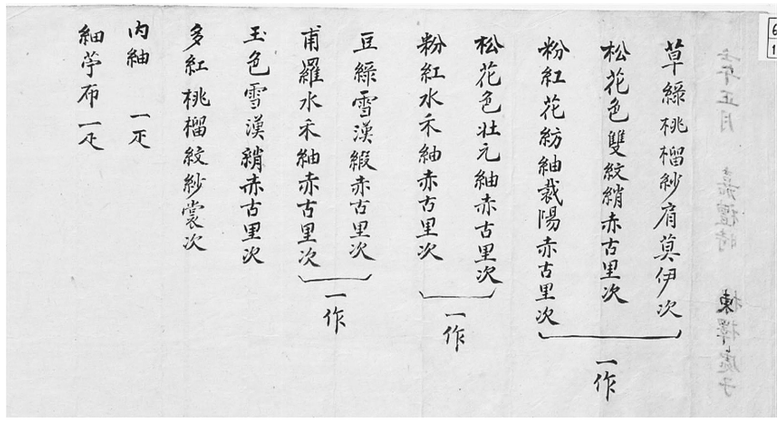
따라서 순종 가례 때에는 간택처자들에게 옷감을 지급하고 같은 옷을 입고 들어오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무리 검소함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택처자들의 복식은 검소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 2〉는 임오년 정월 가례시 간택처자들에게 내려준 옷감이다.

3) 이명은, 「『궁중븰긔』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1쪽.

4) 혜경궁,『혜경궁 읍혈록』육십일세시 친가편,

5)『순조실록』, 순조 19년 윤4월 3일(갑오),『고종실록』, 고종 18년 11월 29일(정사).

〈자료 2〉 壬午正月 嘉禮時 揀擇處子 衣次,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고문서 1152.


草綠桃榴紗肩莫伊次
松花色雙紋綃赤古里次
粉紅花紡紬裁陽赤古里次
松花色壯元紬赤古里次
粉紅水禾紬赤古里次
豆綠雪漢緞赤古里次
甫羅水禾紬赤古里次
玉色雪漢綃赤古里次
多紅桃榴紋紗裳次
內紬 一疋
細苧布一疋

간택처자에게 준 의차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임오 정월 가례시 간택처자 의차〉

구분	착용순서		
	1	2	3
상의 1	粉紅 花紡紬 裁陽 赤古里次	松花色 雙紋綃 赤古里次	草綠 桃榴紗 肩莫伊次
	보라 수화듀 져고리ᄎᆞ	두록 셜한단 져고리ᄎᆞ	초록 도뉴문사 당져고리ᄎᆞ
상의 2	粉紅 水禾紬 赤古里次	松花色 壯元紬 赤古里次	
	두록 수화듀 져고리ᄎᆞ	옥색 별문녕초 단져고리ᄎᆞ	
상의 3	甫羅 水禾紬 赤古里次	豆綠 雪漢緞 赤古里次	
	보라 수화듀 져고리ᄎᆞ	옥식 쟝원듀 져고리ᄎᆞ	
상의 4	玉色 雪漢綃 赤古里次		
	옥식 도뉴문사 져고리ᄎᆞ		
하의 1	多紅 桃榴紋紗 裳次		
	남 별문사 치마ᄎᆞ		
직물 1	內紬 1疋		
	빅정듀 일필		
직물 2	細苧布 1疋		
	셰져포 일필		

위의 자료 중 〈임오 정월 가례시 간택처자 의차〉를 놓고 보면 상의는 4가지 종류가 있으며, 하의는 다홍치마 하나가 있다. 상의 1은 분홍 저고리와 송화색 저고리 위에 초록 견마기를 한 세트로 입는 것이고 상의 2와 3은 분홍 또는 보라 저고리에 송화색 또는 두록색의 저고리를 한 세트로 입는 것이다.

여기에 〈임오 가례시 송현김참판ᄃᆡ니참판ᄃᆡ 의ᄎᆞ 불긔〉와 그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들 상의류 중에는 상호 호환될 수 있는 복색과 의복의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상에 있어서는 보라색과 분홍색, 송화색과 두록색, 분홍색과 두록색, 송화색과 옥색, 두록색과 옥색 등이 호환될 수 있으며, 의복의 종류로는 견마기와 당저고리가 호환될 수 있다. 또한 치마 색에 있어서도 다홍색과 남색이 호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간택처자에게 준 옷감을 살펴보면 첫째, 초간택과 재간택에 입을 수 있는 충분한 량의 옷감이 된다는 점 둘째, 정월에 옷감을 줌으로써 15일의 초간택과 18일의 재간택까지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차 발기가 초간택부터 입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옷을 초간택에 입고 어떤 옷을 재간택에 입었을까? 첫째, 초간택과 재간택에 모두 견마기[당저고리]를 입을 수 있고, 둘째 재간택에만 견마기[당저고리]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이 옷을 초간택과 재간택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의 1의 견마기는 초간택과 재간택에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의 1을 재간택에만 입었다면 상의 2 또는 상의 3은 초간택에 입을 수 있다. 더욱이 상의 2는 명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택처자들이 입고 오는 옷이 명주와 모시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규제로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순종가례 때에는 옷감을 줌으로써 간택처자의 집에서 겪을 수고로움을 덜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초간택을 치르고자 한 왕실혼례문화의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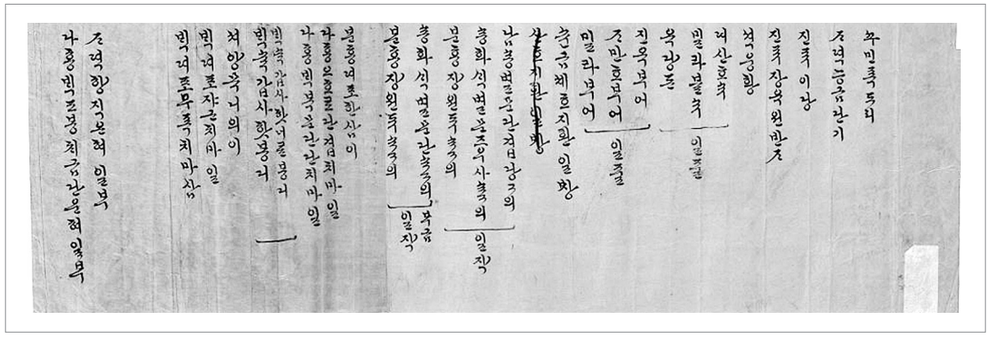
3) 재간택

재간택에 들어온 처자는 모두 7명이다. 좌찬성 민태호의 딸, 현감 김석희의 딸, 부호군 서변순의 딸, 필선 홍승헌의 딸, 전부사 김갑근의 딸, 대사성 오익영의 딸, 진사 홍종익의 딸이다. 이들이 재간택에 입고 들어 온 의복은 초간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홍 화방주 쟁친 저고리와 송화색 쌍문초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초록 도류사 견마기를 입고 들어왔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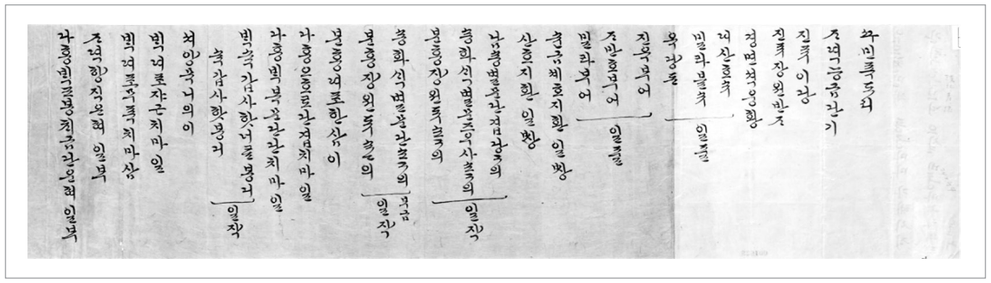
이는 혜경궁 홍씨가 1743년(영조 19) 재간택에 견마기를 입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6]

재간택에서 통과한 처자는 모두 3명이다. 재간택과 관련된 발기는 2건이 소장되어 있다. 두 건 모두 〈임오쳔만세 동궁마마 가례시지간틱후보닉오실 빈궁마누라의디불긔〉로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자료 3〉과 〈자료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이의 색깔에서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물목에 있어서는 〈자료 3〉의 자료에서는 '산호지환 일빵'이 지워져 있다. 또 〈자료 3〉에서는 진쥬장옥원반ᄌᆞ로 되어 있는 반면에 〈자료 4〉에서는 진쥬장옥원반ᄌᆞ로 되어 있다. 또 〈자료 3〉에서는 셕웅황으로만 되어 있으나 〈자료 4〉에서는 경면셕웅황으로 되어 있어 석웅황으로 만든 거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나머지는 모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자료 3〉의 수정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재간택후에 보낸 물목은 수정된 〈자료 3〉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료 3〉 임오쳔만세 동궁마마 **가례시지간틱후보닉오실 빈궁마누라의디불긔**, 장서각 989



〈자료 4〉 임오쳔만세 동궁마마 **가례시지간틱후보닉오실 빈궁마누라의디불긔**, 장서각 961



6) 혜경궁 홍씨 저, 정병설 역, 『한중록』, 문학동네, 2010.

결국 〈자료 3〉과 〈자료 4〉는 재간택이 끝나고 삼간택에 들어올 처자의 집에 보낸 물목으로 왕실에서 직접 만들어 보낸 의대를 입고 삼간택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물목을 보면 왕실의 복식은 민간에서 입는 복식과는 그 구성 및 명칭이 다르다. 따라서 옷감이 아닌 완성된 옷과 장신구 등을 보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발기의 배면에 쓴 제목이다. 아직 삼간택이 행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간택에서 뽑힌 처자에게 '빈궁마누라'라는 호칭이 붙어 있다. 이는 재간택에서 이미 후보가 확정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삼간택에 들어오는 처자는 빈궁마누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4) 삼간택

이제 최종면접만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좌찬성 민태호의 딸, 전부사 김갑근의 딸, 필선 홍승헌의 딸 등 세 명의 처자는 궁궐에서 보낸 의복을 입고 입궁하게 된다. 이는 혜경궁 홍씨가 재간택 하는 날 척수를 재었다는 기록이 있어 본인의 치수에 맞는 의대를 지어 보냈음이 확인된다. 당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경춘전이라는 집에 오래 머무르매 점심을 보내시고 나인이 옷을 벗겨서 치수를 재려고 하였으매 내가 벗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나인이 달래며 억지로 벗겨서 척수를 재었고

이와 같이 재간택에 뽑힌 처자는 왕실에서 만들어 준 의대를 입고 입궁하였음이 확인되며, 순종가례 발기자료에서도 재간택 후 보내오신 발기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임오쳔만세 동궁마마 가례시지간틱후보닉오실 빈궁마누라의디불긔〉를 통해 삼간택의 복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임오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재간택후 보내오실 빈궁마누라의대발기

머리치장		ᄭᅮ민족도리	ᄌᆞ적능금단기	진쥬장원반ᄌᆞ	
몸치장		진쥬이당 슌금셰호지환 1빵 ~~산호지환 1빵~~*	경면셕웅황**	대산호슈 밀라불슈 옥냥돈	진옥부어 ᄌᆞ만호부어 밀라부어
속옷	상의	분홍 저포 한삼 2			
	하의	백 숙갑사 핫 너른봉디 백 숙갑사 핫 봉디	서양목 니의 2	백저포 쟈근치마 1	백저포 무족치마 3
겉옷	상의	남송 별문단 겹당고의 송화색 별문즈우사 소고의 분홍 쟝원듀 소고의	송화색 별문단 소고의 분홍 쟝원듀 소고의		
	하의	다홍 오호로단 겹치마 1	다홍 백복문단 단치마 1		
신발		ᄌᆞ뎍 향직 온혀 1부	다홍 빅조봉ᄎᆡ금단 운혀 1부		

결국 삼간택에 들어올 처자들은 왕실에서 보낸 의대를 입고 궁에 들어왔으며, 속옷으로 먼저 서양목 속곳을 입고 그 위에 솜을 둔 너른바지와 솜바지를 입고 그 위에 백저포 작은치마와 무족치마를 입고 상의로는 분홍색 모시로 만든 한삼을 입는다. 겉옷으로는 상의로 분홍색과 송화색의 소고의를 입고 그 위에 남송색 당고의를 입는다. 또는 분홍색과 송화색 소고의에 부금을 한 것을 입었을 것이다. 치마는 다홍색의 홑치마와 겹치마를 입는다. 머리장식은 자적색의 댕기를 하고 꾸민 족두리를 쓰며 진주 장식을 한 원반자를 꽂고, 대산호수, 밀라불수, 옥댱돈을 한 줄로 묶은 삼작노리개나 진옥, 자만호, 밀라로 부어를 만들어 한 줄로 꿴 삼작노리개를 달았다. 그리고 손에는 순금 세환 지환 또는 산호 지환이 한다. 다음으로 신발은 자적향직 온혜나 다홍백조봉채금단 운혜를 신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모든 의대가 하나가 아닌 둘 또는 셋 이상이다. 이는 한꺼번에 다 입거나 장식할 없는 량이므로 이미 삼간택에 오는 처자부터는 왕실의 다양한 복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대 용어에 있어서도 의차는 저고리감을 준 반면 저고리가 아닌 '소고의'라고 하는 상의류를 보내고 있어 복식에서 신분을 확실히 구분하고자 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고의는 『상방정례』에서 보면 세자빈 이상에서만 보이는 의대물목이다. 고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물목을 빈궁가례의대에서 보면, 초록색의 겉감과 대홍색의 안감이 있으며, 깃을 자

주색으로 달고 솜을 둔다.[7] 특히 고의에는 동정을 달지 않았으며, 정조와 동지에는 솜을 두고 추석에는 겹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향돈피를 대었으므로[8] 방한을 위해 착용한 최고급의 상의임을 알 수 있다.

5) 삼간택 후

이제 삼간택이 끝난 후 별궁으로 갈 때 착용하는 의대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는 〈임오쳔만셰 동궁마마 가례시 빈궁마누라 의ᄃᆡ불긔 삼간ᄐᆡᆨ시〉라는 제목의 발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온전하게 남아 있지는 않아 그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재간택 후에 보내온 의대와 비교했을 때 물목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미 삼간택에는 당고의를 입고 들어 왔으며, 삼간택이 끝난 후에는 본댁으로 돌아가지 않고 별궁으로 이동해 왕실의 법도를 익혀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미 왕세자빈으로서의 대우에 맞는 의대가 마련되었다. 삼간택에 입고 온 복식과 삼간택이 끝난 후 내린 복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자.

먼저 머리치장부터 보면 자적능금당기와 꾸민족두리는 가ᄅᆡ치와 칠보족두리로 바뀌었으며, 노리개는 대산호슈·밀라불슈·옥냥돈과 진옥부처·ᄌᆞ만호산호·밀라부어를 한 줄로 꿴 삼작노리개가 자만호 원향, 대쥬향 노리개로 바뀌었다. 귀걸이는 진주이당으로 같았으나 지환이 빠지고 자적사 부금 면사보 두개가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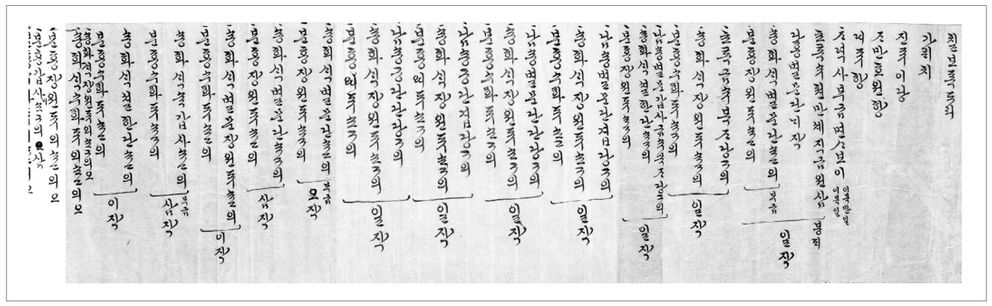
의대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봉대를 갖춘 직금 원삼이 추가되었으며, 홍색으로 만든 내작을 넣었다. 그리고 원삼 안에는 분홍색소고의와 부금한 송화색의 소고의를 입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분홍, 송화색의 소고의와 당고의가 세트가 되도록 하여 6세트를 주었으며, 분홍색과 송화색 소고의가 한세트가 되도록 하여 15세트를 주었다. 여기에는 부금을 한 것도 있고 부금없이 된 것도 있다. 다음은 소고의를 잇소고의. 소고의, 납작누비소고의, 오목누비소고의 등 19건이 있다. 분홍저포 한삼은 10건이 있으며, 치마는 위치마, 겹치마, 단치마, 쟁친

7) 『尙方定例』, 嬪宮 衣襨,串衣一次紫的羅織十尺六寸, 內拱紫的廣的十三尺, 衾紫的羅織長二尺三寸五分廣二寸五分, 中綿子十兩, 縫作紫的眞絲一錢五分, 串衣一次草綠吐紬二十六尺, 內拱大紅綃十一尺, 衾紫的吐紬長二尺三寸五分廣二寸五分, 中綿子十兩, 縫作草綠眞絲八分, 大紅眞絲八分.

8)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157쪽.

단치마 등이 18건이 있다. 그 중에는 전자스란을 갖춘 것이 있고 수복자를 금박하여 갖춘 대란치마도 있다. 아직까지 순종가례의 원삼에서는 겉감과 안감을 함께 만든 겹원삼이 아니라 겉감은 겉감대로 안감은 안감대로 만들어 끼워 입은 형태였음도 확인된다. 본 발기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삼간택시 준 의대 물목은 모두 68품목이었으며, 개수로 따지면 137건이다.

〈자료 5〉〈임오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빈궁마누라 **의뒤불긔 삼간퇵**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본 발기자료는 삼간택시에 내린 물목이므로 여기에서도 머리, 몸, 속옷, 겉옷, 신발 등으로 구분하여 삼간택 후 별궁으로 갈 때 착용하는 복식규모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결국 이것은 삼간택이 끝난 후 본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별궁으로 가야 하는 것이므로 별궁에 갈 때 입고 가는 의대가 될 것이다.

머리장식에 들어가는 물목은 칠보족두리, 가래치, 자적사 부금 면사보를 쓴다. 다음으로 몸치장으로는 진주 귀걸이와 자만호 원향, 대주 향 등 향 노리개를 단다.

속옷으로는 상의로 분홍 저포 한삼을 입었을 것이지만, 하의는 기록이 보이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겉옷으로는 가장 겉에 분홍 장원주 소고의, 송화색 별문단 소고의와 함께 초록색 수천만세 직금원삼을 입었으며, 하의로는 다홍색 별문단 겹치마를 입고 그 위에 일남색 칠보소룡문단 웃치마를 입었다. 이들에는 모두 전자(篆字) 스란을 갖추었다. 따라서 다홍색 치마에 원삼을 입고 면사보를 쓰고 별궁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본의례

본의례는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빈(冊嬪) 또는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同牢)의 육례이다.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처자는 별궁으로 거처를 옮긴 후 왕실의 예절과 언어, 법식 등을 배운다. 육례 중 왕세자빈 또는 왕비가 직접 의례를 거행하는 것은 책빈(책비), 친영, 동뢰연이다. 이들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옷도 옷이려니와 복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머리손질과 화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1) 머리손질과 화장

(1) 빗질하기

조선시대 진정한 미인은 얼마나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다. 머리를 손질하는 데 결정적인 도구는 빗이다. 빗을 만드는 장인은 공조와 상의원에 각각 소속되어 있었다. 공조에는 목소장(木梳匠)·소성장(梳省匠)·죽소장(竹梳匠)이 각각 2명씩 있으며, 상의원에는 목소장과 죽소장이 각각 2명씩 소속되어 있다.[9] 이들이 만들어 낸 빗의 종류는 진소(眞梳), 죽소(竹梳), 목소(木梳), 화각진소(畵角眞梳), 상아소(象牙梳), 면소(面梳), 음양소(陰陽梳) 등 다양한 종류의 빗을 사용하였다.

또 머리손질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기름이다. 왕실여성들에게 진상된 머릿기름은 진유(眞油) 즉 참기름이다. 이는 머리에 윤기를 주기도 하지만 머리카락을 더욱 검게 보이는 역할도 한다.

(2) 피부 가꾸기

피부는 희고 깨끗한 백옥같은 피부를 선호했다. 이는 크고 풍성한 구름 같은 검은 머리와 대조를 이루며 얼굴을 더욱 환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호조에서는 각전과 궁에 분강갱미(粉糠粳米)와 비누소두(飛陋小豆)를 진상했으며, 깨끗하게 세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꿀을

9) 『經國大典』, 工典, 京工匠.

발라 얼굴에 윤기를 주었다. 이러한 조선왕실의 미용법은 호조에서 매달 올린 미용물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 매달 전과 궁에 올린 미용물목

번호	전과 궁	물목	물량	공급처
1	중궁전	분강갱미(粉糠粳米) 황밀(黃蜜) 발유차 진유(髮油次眞油) 비누소두(飛陋小豆) 양치소입목적(養齒所入木賊)	3두(斗) 10근(斤) 1승(升) 첨(添) 1홉[合] 1두 1승 5량(兩)	사도시 의영고 내섬시 내섬시 선공감
2	빈궁	분강갱미 황밀 발유차진유 비누소두 양치소입목적	2두 4근 14량 1승 첨 1홉 1두 1승 5량	사도시 의영고 내섬시 내섬시 선공감
3	원자빈궁	분강갱미 황밀 발유차진유 비누소두 양치소입목적	1두 5승 4근 1승 첨 1홉 1두 5량	사도시 의영고 내섬시 내섬시 선공감
4	세손빈궁	분강갱미 황밀 발유차진유 비누소두 양치소입목적	1두 4근 14량 1승 첨 1홉 1두 1승 5량	사도시 의영고 내섬시 내섬시 선공감

(3) 머리손질하기

왕실에서는 길고 풍성한 머리치장을 위해 체발(髢髮)을 이용했다.[10] 체발은 머리를 땋을 때 본인의 머리에 끼워 넣음으로써 크고 풍성한 머리를 만들기 위한 가발이다. 머리카락 자체만으로도 이미 크고 풍성한 머리치장이 이루어졌으나 여기에 나무, 옥, 산호, 비취 등의 보석에 최고의 세공기술이 더해진 비녀, 떨잠, 대요, 댕기, 떠구지, 족두리, 화관 등을 사용했다. 이들 장신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분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되었다. 이상은 복식을 착용하기 전에 미리 갖추어야 할 준비단계에 해당한다.

10) 이민주, 『조선왕실의 미용과 치장』, 세창출판사, 2019, 80쪽.

2) 예복의 종류

조선시대 예복은 크게 명복과 예복이 있다. 명복은 책봉을 받을 때 입는 옷이며, 예복은 의례 시 각각의 의례에 맞춰 입는 옷이다.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이 책봉을 받을 때 명복으로 내려주는 것은 적의(翟衣)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모든 예복은 원삼(圓衫)으로 통일되고 명복으로 원삼을 입기도 했다.

(1) 적의입기

적의에는 적관을 쓰는 것이 법도에 맞는다. 그러나 1645년(인조 23) 빈궁 책례 때 적의와 함께 입을 적관의 제도를 아는 장인이 한 명도 없었다. 더욱이 적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물품을 중국에서 사와야 하고 끝내 본국에서는 제조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미 1623년(인조 1)에도 적관을 사용하지 않고 체발로 수식을 만들어 예식을 치루었으므로 계해년의 관례[11]에 따라 적관이 아닌 체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자 계해년의 관례를 따르라는 전교가 내려졌다. 이후 적의에는 적관이 아닌 수식을 더하게 되었다.

적의는 왕비와 왕세자빈의 법복이다. 특히 친영의(親迎儀), 동뢰연(同牢宴), 진연(進宴) 등의 가례와 알종묘 영녕전의 길례(吉禮)에 착용하는 대례복(大禮服)이다.

적의의 구성은 조선초기에는 적의를 입을 때 주취칠적관에 금잠, 금적, 보전화결자 등의 물건을 갖추었다고 한다.[12] 그러나 1638년(인조장렬후가례)에서는 적의의 구성이 대삼(大衫), 배자(褙子), 단삼(單衫), 오(襖), 군(裙), 하피, 옥대, 수, 패옥, 대대, 청옥규, 적말, 적석, 체발로 구성되었으나 1681년(숙종인현후가례) 부터는 적의가 별의(別衣), 내의(內衣), 수(綬), 폐슬, 상, 대대, 하피, 수(繡), 패옥, 백옥규, 적말, 적석, 체발로 변화되었다.

1751년의 『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는 적의의 구성이 규, 수식, 의, 하피, 상, 대대, 옥대, 패, 수(綬), 폐슬, 말, 석으로 바뀌었으며, 『상방정례』 왕비의 법복을 보면 적의, 별의, 내의, 폐슬, 대대, 수(綬), 하피, 상, 수(繡), 면사, 말, 석, 패옥, 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적의의 받침옷인 별의와 내의가 추가되었으며, 옷감에서는 필단이 향직으로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다.

11)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7월 6일(을묘)

12)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 2월 4일(기미).

이는 영조의 명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국혼정례』와『상방정례』가 절용(節用)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옷감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향직(鄕織)으로 바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대비는 자적색을 입으며, 왕비는 대홍색, 왕세자빈은 아청색을 입음으로써 신분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색상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색상이 신분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혜경궁 홍씨의 적의 색에 대한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상방정례』진연시 복식을 보면 대왕대비는 자적색적의로 하고, 중궁전은 대홍색적의로 하며, 왕세자빈은 아청색 적의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자궁의 적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1778년(정조 2) 상의원에서는 혜경궁의 복색을 정하는 것이 고민이었다. 세자빈인 혜빈으로 있을 때 입은 적의는 흑색적의이지만 지금은 혜경궁으로 높였으니 어떤 복색을 착용해야 옳은지가 문제였다. 임금 역시 홍문관에 명하여 널리 고찰해 보도록 하였으나 전례가 없으므로 임금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는 의견을 모았을 뿐이다. 이에 정조는 천청색 한가지만이 가장 근사하다고 하여 천청색으로 만든 적의를 착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하교를 내렸다.

> 혜경궁께서 입으실 적의의 복색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진실로 유신이 의논한 말과 같다. 다만 마땅히 옛 것을 인용하고 지금의 것을 참조하여 의의에 맞게 창정해야 하겠는데, 자색은 이존(貳尊)하는 혐의가 있고 흑색은 예(例)를 다르게 하는 뜻이 없으며, 홍색과 남색은 각각 쓰고 있는 바가 있어 원래 인용할 만한 사례가 없다. 내 생각에는 오직 천청색(天靑色) 한 가지가 근사한데 본시 청색은 동조(東朝)의 복색이었으나 자색으로 제도를 정하게 된 뒤부터는 치워두고 쓰지 않게 되었다. 지금 천청색으로 작정을 함은 곧 청흑의 의의를 취한 것인데 동조의 적의를 자색으로 하여 홍흑(紅黑)의 의의를 취한 것과 오묘하게 맞게 되고 또한 차등도 있게 된다. 이미 대신에게 물어보니 대신의 뜻도 그러하다 하니, 혜경궁의 복색을 천청색으로 정하라.[13]

혜경궁의 적의를 천청색으로 정한 것은 원래 세자빈의 흑색에 동조의 청색을 합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혜경궁을 동조에 빗댄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조는 대비가 거처하는 궁궐을 일컫는다. 그러니 혜경궁의 적의에 청색을 더한 것은 대비의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정조의 마음 속 대비는 분명 혜경궁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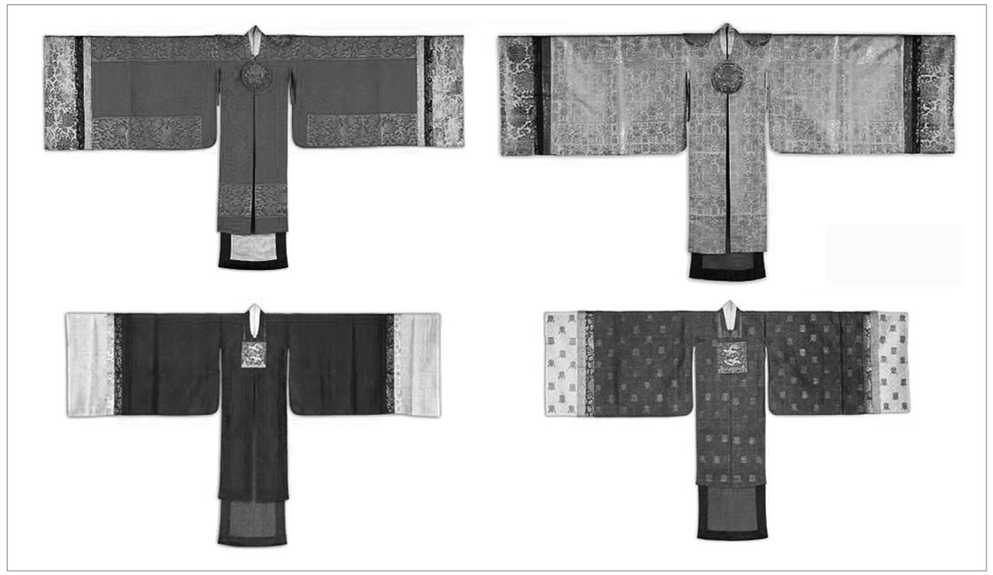
13)『정조실록』5권, 정조 2년 4월 26일(을묘).

이후 대한제국기 적의는 심청색으로 바뀌면서 복색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금까지 적문을 그리거나 수원적을 붙이던 방식에서 적문을 시문한 채적문단을 사용함으로써 직물과 색상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별의나 내의에 해당하는 받침옷이 중단이 되었으며, 여기에 황후는 12등, 황태자비는 9등으로 차이를 두기도 했다.

(2) 원삼입기

원삼의 착용은 그 기원이 오래되었다. 1505년(연산군 11) 사라능단의 값이 뛰어 올라 가난한 조신(朝臣)의 경우 조하(朝賀)나 조참(朝參)에 참여할 때 입어야 하는 단령을 장만하지 못해 여자의 원삼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당시 태반이 여자용 원삼을 입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원삼은 앞길이가 뒷길이보다 짧고 앞길의 좌우가 대칭을 이루며 깃이 둥근 맞깃의 형태이다. 소매는 넓고 크며, 소매 끝에는 두 줄의 색동과 한삼이 달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정착된 것은 조선 후기로 보이며 신분에 따라 복색에 차등이 있다.



〈그림 1〉 신분별 원삼의 복색,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635년(인조 13) 숙의(淑儀) 김씨의 가례 때 명복으로 내려 준 옷이 흑색원삼이었으며, 그 이후 1686년(숙종 12)에도 숙의 명복으로 원삼을 하사하였다. 이후『상방정례』에는 중궁전의 원삼은 보이지 않고 세자빈의 초록원삼만 보인다. 따라서『상방정례』를 편찬 할 당시에는 중궁전은 원삼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 원삼은 모든 여성의 최고예복이 되어 신분에 따라 모양과 수식을 달리했다.

1788년(정조 12) 내명부나 외명부의 원삼에는 소매 색동의 다과(多寡)와 옷감의 색이 다르며, 흉배도 신분에 따라 달리 한다[14]고 하였으며, 1873년(고종 10)에는 원삼을 입을 경우에는 반드시 큰다리[대체]와 둥근다리[위체]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원삼을 명복으로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체와 위체 두 가지 장식은 그리기가 어려워 이름만 적어 놓았다고 하였는데, 그 모양은 외전(外殿)의 익선관과 같다고 하였다.[15]

(3) 받침옷 입기

왕실여성의 적의를 착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몸치장은 남성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먼저 상의로는 속적삼에 해당하는 삼아를 입는다. 그 위에 소매가 긴 활한삼을 입고 다시 호수를 입는다. 호수 역시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왕실여성 중 공주까지만 착용할 수 있는 귀한 옷이다. 또한 호수는 가례물목에는 들어 있으나 탄일이나 절일에는 진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평상시에는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례 등 의례 때 저고리와 함께 착용한 상의 정도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저고리를 입는데 저고리는 왕실여성의 대표적인 상의이다. 저고리의 종류는 겹저고리, 유저고리, 솜저고리가 있다. 여기에 왕실여성만이 착용하는 고의(袴衣)를 입고 그 위에 개오를 입는다. 개오 역시 탄일이나 절일에 들이는 물목은 아니므로 특별한 의례에만 착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착용했다면 고의 위에 입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하의에는 니의(裏衣)를 입는다. 니의는 기본적으로 속옷을 일컫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에 받쳐 입는 옷을 나타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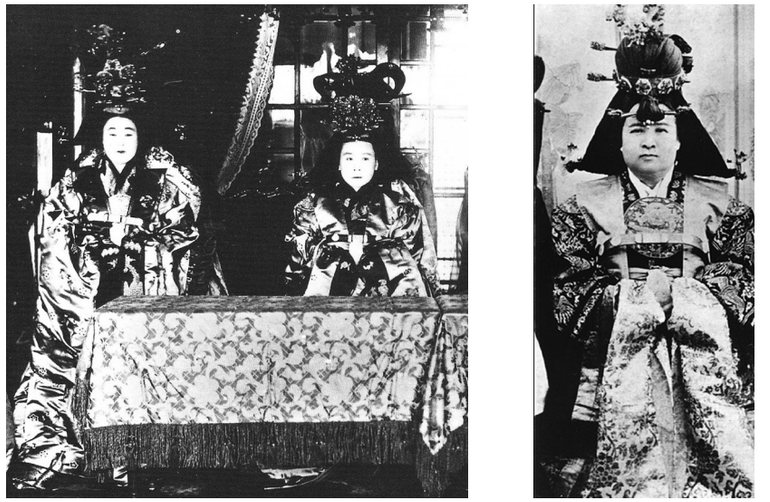
한편 속옷에 해당하는 친의(襯衣)도 있다.『상방정례』나 의궤류에는 단니의나 니의만을

14)『정조실록』26권, 정조 10월 3일(신묘).

15)『고종실록』10권, 고종 10년 8월 29일(을사).

수록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속옷을 다 입었다고는 할 수 없다. 장서각에 소장된 발기류에는 다양한 속옷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882년(고종 19, 임오년)에 순종의 가례를 치르면서 침방에 내려준 발기자료를 보면 친의류로 봉디, 단니의, 무족치마, 니의 등이 있다. 이들 속옷은 각각 입기도 하지만 짝을 이루기도 한다. 너른봉디와 봉디, 단니의와 봉디가 그 예이다. 이렇게 속옷을 차려입고 나면 본격적으로 치마를 입는다. 치마는 내상과 외상의 치마를 입고 전행웃치마를 입은 다음 별의를 입는다. 대홍색 별의위에 적의를 입은 후 후수와 함께 대대를 하고 폐슬을 대대에 건다, 적의 위에는 하피를 어깨에 걸친다. 옥대를 하고 그 위에 패옥을 건다. 수식을 하고 적석을 신고 규를 들면 적의가 갖춰진다.

원삼을 명복으로 입을 때에도 적의를 입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전하는 사진 중 적의와 원삼을 명복으로 입은 모습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적의와 원삼

이처럼 왕실복식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식을 통해 위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옷도 입고 치장도 하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얼마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가를 더욱 중시하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 『尙方定例』
- 『(순종)왕세자가례도감의궤』
- 『예종실록』
- 『인조실록』
- 『정조실록』
- 『고종실록』
- 『순조실록』

- 이명은, 『『궁중불긔』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이민주, 『조선왕실의 미용과 치장』, 세창문화사, 2019.
- 혜경궁 홍씨 저, 정병설 역, 『한중록』, 문학동네, 2010.
- 혜경궁, 『혜경궁 읍혈록』 육십일세시 친가편.

10월 16일

문화답사 : 종묘

조선시대의 종묘 제사

한형주 _성북선잠박물관장

조선시대의 종묘 제사

한형주 _성북선잠박물관장

1. 종묘제의 기원과 의미

(1) 종묘제의 의미

종묘(宗廟)는 역대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왕조의 신전[사당]이다. 전통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은 정신[魂: 혼]과 육체[魄: 백]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정신은 하늘로 흩어졌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후손은 죽은 육체를 묻은 곳에 묘(墓)를 세우고, 혼이 머무도록 묘(廟)를 세워 추모하였다. 이같은 묘(墓)와 묘(廟)의 건립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그 규모와 모시는 시간은 후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랐다. 지극히 존귀한 존재인 왕의 경우 육체를 모신 곳을 능(陵)이라 하고 혼을 모신 곳을 종묘(宗廟)라고 불러 구별하였다. 종묘의 경우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의미에서 태묘(太廟)라고도 불렀다.

종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신전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신전이나 기독교의 교회들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들을 모셔놓고 추앙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조상숭배 사상을 바탕으로 한 추모의 장소인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오랜 기간동안 부모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계실 때처럼 모시며 추모하는데, 그 장소가 사당이고, 이 사당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 종묘인 것이다. 제사는 자식이 부모를 추모하는 '효'사상을 바탕으로 시행되지만, 한편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 몰려든 일가 친척들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위인 것이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종묘제례를 거국적으로 시행하며 왕실의 안녕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왕실의 안녕은 국가가 평안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양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다.

(2) 종묘제의 기원

흔히 종묘제례는 대표적인 전통행사로 손꼽히지만 실상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제도는 아니다. 종묘제례는 유교문화의 보편적인 의식에서 나왔고, 그 기원은 중국 고대에서 찾아진다.

중국에서의 종묘제는 은나라(BC 1766~BC 1122) 때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실상은 잘 알 수 없다. 나름의 체계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시대는 주나라(BC 1111경~BC 256) 때부터이다. 주나라의 종묘제는『예기』라는 책의 왕제편에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주나라에서는 천자의 종묘가 건국자인 태조묘와 짝수 세대인 소(昭) 3묘, 홀수 세대인 목(穆) 3묘가 합쳐 7묘(廟)를 이루며, 제후의 경우 태조묘와 소 2묘, 목 2묘가 합쳐 5묘를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예기』의 간단한 서술에 대하여 후대의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중에서 성리학의 집대성자로 알려진 남송 대 주희(1130~1200)의 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그는 주대의 종묘제를 대략 2가지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그는 '천자는 7묘'에서 '묘'를 세대로 파악하였고, 이중에는 옮겨지는 신주와 옮겨지지 않는 신주의 구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천자의 7묘는 태조묘(1대)와 1소(2대), 1목(3대), 2소(4대), 2목(5대), 3소(6대), 3목(7대)로 구성되는데, 새로운 신위가 들어오면 세대가 지난 신위를 옮겨서 대수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공(功)과 덕(德)이 있는 소 1위와 목 1위는 '세실'로 정하여 신주를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실제 주나라 종묘의 신주는 9개라고 설명하였다.

둘째로 주희는 주나라 종묘는 1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채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한 건물들의 종합세트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종묘의 큰 구획 안에 태조묘는 북쪽에 있고, 왼쪽에 소묘가, 오른쪽에 목묘가 각각 위치했는데, 각각의 묘 역시 독자적인 공간 및 건물들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주희의 주나라 종묘제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후대의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태조묘, 소묘, 목묘가 독자적인 공간을 갖는 이러한 종묘의 형태는 후한(後漢)때에 이르러 일자(一字)형 건물을 세워 그곳의 방을 나누어 신주를 모시는 방식으로 크게 바뀌었다. 흔

히 동당이실(同堂異室)이라는 건물의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때까지 중국 종묘제의 기본 체제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종묘제는 주나라의 제도가 아닌 당나라 이후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식이었다.

2. 종묘제의 운영원리

현존한 종묘는 19실로 구성되어 있다. 19실의 규모는 앞서 언급했던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라는 종묘의 기본 원칙을 생각할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현재 중국 북경의 자금성 앞에 남아있는 명·청시대의 태묘(종묘)와 비교해 볼 때 조선의 종묘는 너무나 큰 데 제후국을 자처했던 조선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대부 집안의 사당에는 고조-증조-조-부와 같이 세대를 달리한 신위를 모셨지만, 조선의 왕위계승에는 정종-태종, 문종-세조, 인종-명종, 경종-영조 등과 같이 형제 상속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현대인들이 종묘를 보면서 느꼈던 이상과 같은 의문들을 조선시대 당대의 유학자들도 똑같이 느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의문들을 역대 의례의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묘제 운영의 기본 원리들이 내세워졌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자.

(1) 동당이실제

1607년(선조 40) 2월 14일 선조는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종묘를 다시 세우는 문제를 신하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그는 왜란 전의 종묘를 그대로 복구할 것이 아니라 역대의 제도를 검토하여 새로운 종묘를 모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왜란이 끝난 지 어느덧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전쟁 중에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종묘의 재건을 통해 높이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왕의 명령은 과거의 종묘가 고대의 이상적인 주나라의 제도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던 젊은 유신들에게 그 제도를 변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홍문관을 중심으로 한 유신들은 과거 종묘에서 사용했던 '동당이실'의 건축 양식은 3대(하·은·주나라)의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한나라의 명제 때 일자형의 건물에 각 실을 나누어 서쪽부터 신위를 배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건국자인 태조의 신위가 왼쪽 귀퉁이에 빌붙어 있는 참람된 형상을 연출했고, 만약 1묘가 친진으로 나가게 될 경우 오른쪽의 신위들을 차례로 옮겨야 하는 폐단이 나왔다고 비판하였다. 반면에 주나라의 종묘는 바깥쪽에 도궁(都宮)이 있고 그 안에 묘(廟)가 있는 형태인데, 묘의 위치는 태조묘가 북쪽 가운데에, 소묘가 서쪽에, 목묘가 동쪽에 위치하였고, 여기에 동북쪽에 소세실이, 서북쪽에 목세실이 각각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주나라의 방식을 좇아 태조묘와 세실묘, 2소 2목의 묘를 각각 구분하여 세우되 형제상속은 1묘로 간주하자고 주장하였다.

주나라의 제도를 따르자는 주장은 상당수 유신들의 동조를 얻었다. 그렇지만 당시 집정 대신들의 생각은 달랐다. 대신들은 젊은 유신들의 뜻은 비록 훌륭하지만 건국 이래의 선왕들이 시행했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고, 더욱이 주나라의 방식은 종묘의 대규모 확장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하였다. 선조는 새로운 방식의 종묘 재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예전 방식으로 종묘를 재건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종묘의 재건은 시작되었지만 정작 완성된 것은 광해군이 즉위한 5월이었다.[16] 이때의 종묘는 왜란전과 동일하게 '동당이실'제에 따라 정전 11칸, 협실 각 2칸으로 지어졌다.

위에서 보듯이 조선시대의 종묘는 건물의 형태가 '동당이실(同堂異室)'의 모습이었다. 동당이실은 하나의 긴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실(室)을 만들어 신주를 모시는 방식이다. 조선 건국후인 1395년(태조 4) 9월 29일 처음 종묘가 완공되었을 때 건물 하나에 정전 7칸과 협실 각 2칸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신주를 왼쪽부터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차례로 모심으로써 서쪽이 위라는 서상(西上)의 관념을 드러냈다.

동당이실의 형태는 태조묘 이하 5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각각에 부속 건물들이 들어서는 주나라 종묘제의 방식에 비하여 일단 그 규모가 작다. 게다가 형제로 왕위에 올랐던 선왕의 신위 배치는 칸 하나만 늘리면 되기 때문에 전체 공간을 재배치해야 되는 주나라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이러한 이유로 동당이실의 형태는 한나라 이후 일반화되었고, 특히 형제간을 1세대로 간주하는 동세이실제의 시행은 동당이실의 형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

16) 『光海君日記』 권4 光海君 즉위년 5월 乙卯 "重建宗廟成 都提調以下 賞賜有差"

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뒤에서 언급하듯이 시대가 내려갈수록 옮기지 않는 신위인 '세실'의 확대로 봉안된 신주들이 점점 늘어났다. 따라서 늘어나는 신주를 모시기 위해서 종묘의 증축은 불가피하였다. 1546년(명종 1)에 정전이 4칸 증축된 이후 현종 8년(1667), 영조 2년(1726), 현종 2년(1836)에 각각 묘실이 늘어났던 것은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조처였는데, 그 결과 현재의 종묘는 19칸에 이르는 웅장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2) 동세이실제

중국의 주나라에서는 제사를 시행할 때 대상이 되는 조상의 직계 후손, 그중에서도 큰 아들[長子]만이 주관자가 될 수 있었다. 직계의 장자 즉 종자손(宗子孫)이 종가(宗家)를 계승하고 그 집안을 상징하는 제사를 주관한다는 종법사상(宗法思想)은 주나라 이후 역대의 중국에서 사회 조직의 기본원리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제사를 시행할 때 과연 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는 상당기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후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세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의례』와『예기』를 비롯한 중국 고대의 예서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범위를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 경대부(卿大夫)는 3묘, 사서인(士庶人)은 1묘'로 각각 규정하였다. 이것은 종자(宗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제사의 대상 및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제례에 포함되어 있는 '차별'의 기본 속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범위는 앞서 말했듯이 경대부 이하에서는 그 적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최고의 권력과 연결된 천자·제후의 경우 실제의 적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나라에서는 천자의 7묘를 7대로, 제후의 5묘를 5대로 각각 해석하였다. 즉 1묘를 1세대의 1위의 신주로 파악한 것이다. 천자의 7묘는 건국자인 태조묘와 6세대의 조상으로 구성되었다. 6세대 중 짝수인 2대·4대·6대를 소묘(昭廟)라고 부르고, 홀수인 3대·5대·7대를 목묘(穆廟)로 불렀다. 이중 태조위는 왕조 멸망기까지 영원히 모시는 불천위(不遷位)인 반면에 6대의 조상은 그 세대가 다하면(이를 진진〈親盡〉이라고 한다) 제일 윗세대의 신주를 옮겼다. 예컨대 현재의 천자가 죽으면 태조위를 제외한 가장 윗세대 즉 6대조의 신위를 옮기고 그 자리에 죽은 천자의 신위를 모심으로써 그 수를 조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제후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주나라의 모델과 달리 천자·제후의 지위는 종자로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천자·제후가 죽었을 때 그에게 자식이 없거나 어릴 경우 그 지위의 계승이 경대부 이하처럼 양자를 통해 이어지기 어려웠다. 경대부 이하에서의 계승이 제사권과 재산권의 상속에만 한정된 반면 천자·제후는 천하·국가의 통치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왕위(황위) 계승은 종자가 없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뿐 아니라 현실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찬탈(簒奪)이나 가계(家系)의 이동 등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가 건국된 이후 몇 대에 걸쳐 형제간에 왕위가 계승될 경우 종묘에서 그 신주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는 중국 역대의 왕조에서 계속 고민했던 문제였다.

중국의 한(漢)나라를 지나 남북조(南北朝) 시대를 거치면서 종묘의 신위에 대한 이해는 고대 주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다. 남북조 시대의 진(晉)나라에서는『예기』와『춘추』에 기록된 '형제간에는 소목을 같이 한다.' 라는 대목을 근거로 혈연상 같은 세대의 신위는 종묘에서 묘(廟)를 같이 하는 1대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즉 기존에 1묘를 1세대, 1인으로 파악한 방식과 달리 1묘=1세대는 동일하지만 1세대를 반드시 1인으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동세이실(同世異室)' 이라고 불렀다.

동세이실의 방식은 진나라 이후 중국 역대의 왕조에서 그대로 시행하였다. 진나라의 종묘가 6대 11실이었고, 당나라의 종묘가 9대 11실, 송나라의 종묘가 9대 12실, 나아가 고려의 종묘가 5대 9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제도를 적용한 까닭이었다. 여기서 세대와 묘실의 차이는 그만큼의 형제상속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세이실은 조선의 건국 직후부터 적용되어 멸망기까지 이어졌다.

(3) 세실제

1496년(연산군 2) 윤3월 5일 왕의 아버지인 성종을 종묘에 모시기 위한 조정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안건은 '성종을 종묘에 봉안했을 때 친진이 된 정종과 태종의 신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이때 종묘에는 태조(1대), 정종·태종(2대), 세종(3대), 문종·세조(4대), 덕종·예종(5대)이 모셔져 있어 전체 5묘 8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의 종묘는 태조 때 건립된 정전 7칸, 협실 좌우 2칸씩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정종은 정전 칸 수의 부족으로 이미 성종 때

에 협실로 옮겨진 상황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조정 대신들은 성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경우 6묘가 되기 때문에 예제에 따라 1대의 신주를 옮겨야 한다는 사실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과거 이성계의 증조 할아버지인 목조의 경우 정종이 종묘에 봉안되었을 때 5대가 넘어 별묘인 영녕전으로 옮겨졌고, 세종의 사망으로 익조가, 문종의 사망으로 익조가, 예종의 사망으로 환조가 각각 영녕전으로 옮겨진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목조, 익조, 도조, 환조는 원래 왕이 아니라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 왕으로 추증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별묘로 옮길 때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왕으로 재위했던 신위를 대상으로 하고, 더욱이 태종이라는 공로가 혁혁한 왕을 옮기는 문제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태종을 영녕전으로 옮기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같은 세대인 정종을 종묘에 그대로 놔둘 생각 또한 없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세실'의 이론이 주목되었다. 세실론은 전년도 10월 2일 예조판서 성현 등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은 제왕의 '공'과 '덕'이었다. 성현은 주나라에서는 천자의 3소, 3목 외에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묘가 따로 있었는데, 이를 세실이라 불렀고, 제후국인 노(魯)나라에서도 2소, 2목 외에 노공(魯公)의 세실이 따로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중요한 공(功)과 덕(德)이 있는 제왕의 경우 천자·제후의 묘수(廟數)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은 고대부터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북조 시대 진나라의 종묘는 6대 11실이었고, 당나라는 9대 11실, 송나라는 9대 12실이었다. 이것은 제후국인 진나라에서는 1대, 천자국이었던 당·송에서는 2대가 각각 세실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세실로 지정된 신위는 7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태조묘와 더불어 영원히 종묘에서 옮겨지지 않는 불천위가 되는 것이다.

결국 연산군대 친진의 대상이 되었던 2개의 신위 중에서 태종은 불천위로 종묘에 남겨졌지만 정종은 별묘인 영녕전으로 옮겨졌다. 1547년(명종 2) 중종이 종묘에 봉안되었을 때도 세종은 친진의 대상이지만 '세실'로 지정되어 종묘에서 옮겨지지 않았다. 1569년(선조 2) 명종이 종묘에 봉안되었을 때는 친진의 대상이 문종과 세조였는데, 이중 문종은 영녕전으로 옮겨졌지만 세조는 역시 '세실'로 지정되어 옮겨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조 말기까지 계속 이어져 세실로 지정된 신위는 종묘에 남겨졌고, 그렇지 않은 신주만이 영녕전으로 옮겨졌

던 것이다.

원래 불천위(세실)는 대상이 되는 신주가 친진으로 종묘를 나가야 할 시기에 정해져야 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친진의 시기가 되기 훨씬 전에 미리 정해졌다. 1424년(세종 6) 태종을 종묘에 봉안한 직후에 태종을 불천위로 지정했고, 1452년(문종 2)에는 태종·세종을, 1470년(성종 원년)에는 태종·세종·세조를 불천위로 각각 지정하는 등 친진이 되기 이전에 불천위는 정해졌다. 물론 미리 지정된 불천위가 반드시 후대에 그대로 시행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실제 조선의 역사에서는 그대로 시행되었다. 이같이 불천위를 미리 정하는 것은 옛 왕의 은택을 생각하고 현왕이 그 효도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치장되었다.

현재 종묘의 정전에는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 순조, 문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등의 19위 신위가 모셔져 있다. 영녕전에 모셔진 16위보다 그 숫자가 더 많다. 황제국이었던 대한제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국자인 태조와 순조, 문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등의 6위는 종묘 7실을 구성하는 기본 묘의 수가 된다. 이에 반해 7실을 제외한 태종부터 정조에 이르는 12위는 불천위가 된다.

종묘의 기본 묘수가 7실인데 반하여 예외인 불천위가 12실에 이른 것은 역대 중국의 종묘제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왕조에서는 소 세실과 목 세실을 각각 1위씩 총 2위의 세실이 추가될 뿐이었다. 이것은 조선왕조와 같은 시대에 존재했고, 멸망 이후에도 조선의 의례에 큰 영향을 미쳤던 명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명나라의 태묘는 태실이 9칸으로, 태조 및 6위, 그리고 세실 2위로 구성되었다. 오히려 그들은 형제를 같은 세대로 파악하는 동세이실제를 적용하지 않고 1위=1세대로 파악함으로써 전체 9실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조선의 종묘제는 명분상으로 5묘제의 원칙을 지키는 듯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세실제를 통해 신실의 증가를 계속 허용했던 것이다.

3. 종묘와 영녕전의 증축

현재의 종묘는 총 19실로 구성되어 있다. 건국 초 태조대에 이루어진 7칸에 비하여 거의 3

배 가까이 그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명종대 이후 신실이 부족할 때마다 종묘의 증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아울러 종묘의 증축과 별도로 영녕전의 증축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종묘의 증축이 처음 논의된 것은 성종 7년(1476)이 처음이었다.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종묘는 정전 7실과 협실이 좌우 각 1칸으로 건축되었는데, 이때의 묘실에는 1실에 태조, 2실에 정종, 3실에 태종, 4실에 세종, 5실에 문종, 6실에 세조, 7실에 예종이 있어 정전이 꽉 차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성종이 재위 5년에 자신의 친부인 의경세자의 고명을 받고, 이를 근거로 덕종(德宗)으로 묘호를 올린 후 부묘를 강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주를 봉안할 정전의 수가 모자라자 정종을 협실(夾室)에 옮긴 것이다. 당시 추존된 덕종을 부묘하기 위해 아직 친진이 안된 상태이고, 또 정통의 군주인 정종을 협실로 밀어내는 현상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종묘의 증축이었다. 그러나 종묘의 증축은 경솔히 시행할 수 없다는 국왕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정종의 협실로는 이안은 불가피한 권도라는 명분으로 강행되었다.

이 문제는 연산군 2년(1496)에 이르러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때의 종묘는 1실에 태조, 2실에 태종, 3실에 세종, 4실에 문종, 5실에 세조, 6실에 덕종, 7실에 예종이 있고, 정종은 협실에 있었는데, 이제 성종의 부묘로 묘실의 조정은 불가피하였다. 이때 연산군과 제신들은 이 문제를 성종대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어차피 정종은 5대의 친진이 되었으니, 영녕전으로 그 신주를 옮기고, 문종의 경우 불가피하게 익실(翼室)로 그 신주를 옮기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홍문관부제학 박처륜(朴處綸) 등은 정종의 영녕전으로의 이안은 타당하지만 문종의 익실로의 이안은 부당하다며, 증실(增室)을 통해 성종을 부묘하자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전자의 의견으로 결정되었다.

이 상황은 명종 원년 3월에 이르러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당시 묘실은 1실(태조), 2실(태종), 3실(세종), 4실(세조), 5실(덕종), 6실(예종), 7실(성종)이고 문종은 서협실에 있었다. 이 때 태종·세종·세조는 세실로 규정되었고, 문종·세조가 1대, 덕종·예종이 1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금 중종을 부묘하면 4세 6실(2소2목)이 되고, 인종의 부묘가 이루어지면 5세 7실이 된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5묘제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종묘의 칸수가 모라란다며, 과거 성종의 부묘시에는 증축 논의가 있었으나 문종의 신주를 협실로 옮기면서 문제

를 해결했으나, 지금 중종을 신부(新祔)하고 인종을 장차 부묘하려 하니, 어쩔 수 없다며, 종묘에 3칸을 증건하자고 주장하였고, 이는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것은 정종·문종을 종묘의 정전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인 것이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선조대 말년에 이르러 종묘의 중축을 둘러싼 논의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파괴된 종묘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종묘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한 것이다.

선조 40년 3월 홍문관은 차자를 올려 종묘제를 논하였다. 그들은 현재 종묘의 건축물은 同世異室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동세이실은 東漢의 明帝때부터 시행된 것인데 예제상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난하였다. 그 주장에 따르면 주대에는 태조묘는 동쪽에, 昭廟는 동쪽에, 穆廟는 서쪽에 있는데 모두 남향했다고 한다. 소목은 1世에 1遷하되, 태조는 百世不遷했고, 文王은 昭世室을, 武王은 穆世室을 이루어 역시 백세불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세실의 남쪽 왼쪽에는 3소가, 오른쪽에는 3목이 각각 있으며, 소묘와 목묘와 친진한 신주는 소목에서 빠져나와 좌우의 협실에 안치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주대 종묘를 재현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주대와 다른 종묘의 형태는 주자가 말했듯이 현재 일자형의 종묘에서는 서쪽을 상위로 삼아 태조위를 모시는데, 태조위가 자손과 나란히 하여 한쪽 귀퉁이 있으니 친묘를 설만하는 것이고, 事生事存의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고제에서는 昭主를 부묘하면 穆主를 움직이지 않고, 목주를 부묘하면 소주가 움직이지 않으나 지금은 1실을 부묘하면 群室이 모두 움직인다며 비판하였다. 따라서 주자가 송 仁宗은 태종묘의 동편에 세실을, 고종은 인종묘의 동편에 세실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세실은 2소2목에 들어가지 않지만 2소2목과 나란히 하지 않고, 세실이 생기면 기존 세실의 옆에 소와 목을 구분하여 신주를 모셔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형제가 상속하면 이는 1묘로 간주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지적했다며, 새로운 종묘의 건설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위와같은 방식으로 지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서 보듯이 위의 그림은 종묘와 천묘를 한 곳에 모아 놓아서 협실이 遷廟로 활용하고 있고, 세실이 추가될 경우 소·목과는 별도로 세실묘에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홍문관의 종묘제 검토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대다수가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음달 실제로 시행하려는 논의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다수 반대하였다. 즉 옛날의 제도대로 그대로 하자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종묘의 터가 부복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 그리고 중국과 달리 우리는 영녕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결국 새로 廟宇를 창건함에 古禮를 회복해야 하는데, 의견이 분분하여 시행되지 못하니 안타깝다는 史論에서 보듯이 새로운 형태의 종묘는 모색되지 못하였다. 결국 선조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종묘는 광해군 즉위년에 명종대의 규모로 중건되었다.

이후 영조 2년(1726)에 정전 4칸이 더 늘어났고, 다시 현종 2년(1836)에 다시 4칸이 늘어 총 19칸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녕전은 세종 3년 10월에 正殿 4칸과 동서의 夾室 각 1칸씩으로 만들어졌다.[17] 영녕전의 모델이 된 것은 宋 태조 원년에 4조인 僖祖, 順祖, 翼祖, 宣祖를 추숭해 崇元殿에 봉안한 고사를 본받은 것이고, 祧室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세종 3년 12월 종묘에 있던 목조의 신위가 정종의 부묘로 5묘가 넘어가자 처음 영녕전으로 조천되었고, 이후 역대의 왕들이 사망해 종묘에 부묘되면, 그로 인해 親盡된 신주들은 영녕전의 各室에 옮겨졌다. 문종 2년 세종의 부묘로 익조가 영녕전의 2실로 옮겼고,[18] 단종 2년 문종의 부묘로 도조가 3실로,[19] 성종 3년 예종의 부묘로 환조가 4실로 봉안되었다.[20]

추존 4대를 제외하고 친진된 신주를 영녕전에 모시는 문제는 연산군 초기에 제기되었다. 연산군 원년 10월에 예조판서 성현과 참판 신종호는 '宗廟祧遷儀'를 올리면서 지금 성종의 부묘로 5묘가 넘으니 태종·공정왕을 親盡시켜야 하는데, 태종은 백세불천지주이기 때문에 조천시킬 수 없고, 공정왕은 廟號도 없고, 당시의 복상도 27일에 불과했으며, 능에도 節祭만 시행하는 등 여타 신위와 다르게 취급했으니, 친진된 상황에서 당연히 祧廟로 옮겨야 하는데, 지금 조묘의 제도가 없으니 공정왕과 정안왕후의 신주는 厚陵에 매장하자고 주장하였다.[21] 이 주장에 따르면 영녕전을 태조의 추존된 4대를 위한 것으로만 인식했을 뿐 친진된 국왕을

17) 『世宗實錄』卷 13 世宗 3年 10月 戊戌.

18) 『문종실록』권 13 문종 2년 4월 계유.

19) 실록에는 따로 度祖의 祧遷기사가 보이지 않지만,『端宗實錄』卷 11 端宗 2年 7月 甲子에『奉文宗大王 顯德王后神主 詣宗廟 其儀 前二日 預告永寧殿 其具饌行禮 如常告儀(祝文兼述度祖遷祔之意)라는 언급에서 16일 문종의 부묘와 더불어 度祖가 永寧殿에 봉안되었음을 알수 있다.

20) 『성종실록』권 14 성종 3년 정월 기유.

21) 『연산군일기』권 9 연산군 원년 10월 신해.

모시는 別廟(祧廟)로서의 역할은 기대하지 않았고, 정종을 위해 그것을 별도로 운영할 용의도 보이지 않는다. 이 주장이 개인이 아닌 예의를 주관하는 관서인 예조에서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상황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하여 金馹孫과 李胄가 상소를 올려 예조에서 공정왕의 신주를 능침에 묻는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1대에 그치는 신주(후손이 왕위에 오르지 않는 신주)는 전부 능침에 묻을 것이냐며 반문하고 이는 삼대의 제도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만약 공정왕의 신주를 친진할 경우 삼대의 조묘를 모방한 영녕전에 모시면 된다고 반대하여 다시 이 문제를 대신들로 하여금 논의하게 만들었다.[22]

다음해 1월 이 문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다.[23] 논의의 내용은 윤필상, 김경조, 김심 등은 기본적으로 영녕전은 태조의 사조를 모시려는 뜻으로 설립된 것으로 조묘가 아니라며, 예조의 뜻과같이 능침에 그 신주를 묻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는 공정왕의 신주를 영녕전의 협실에 모셔 조천의 예를 다하자고 하였다. 결국 왕은 이들의 의견에 따라 공정왕을 영녕전의 익실로 조천하여, 영녕전의 정전에는 태조의 4조를 친진신주는 협실에 모시는 현존 영녕전 체제의 시초가 되었다.

그런데 이후의 왕들이 신위를 배치할 때 정전에는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안치시키고는, 나머지 친진된 왕들은 협실에 모셨으며, 이후 증가되는 신주는 협실의 증축을 통하여 해결하였던 것이다. 즉 광해군대 영녕전을 증축할 때 정전 4칸, 협실 좌우 3칸씩으로 만든 이후 현종 8년(1667)에는 협실을 좌우 1칸씩 늘렸고, 헌종대에는 다시 2칸씩 증축, 전체 정전 4칸, 협실 좌우 각 6칸으로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22) 『연산군일기』권 10 연산군 원년 11월 정미.

23) 논의의 내용은『연산군일기』권 12 연산군 2년 정월 무자, 기해 등 참조.

10월 23일

영조 계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임혜련 _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영조 계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임혜련 _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

1. 정순왕후는 누구인가

1) 영조와 혼인한 정순왕후

영조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는 영조 21년(1745년) 11월 여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 김한구(金漢耉)이며, 어머니는 원풍부부인(原豊府夫人) 원씨(元氏)이다. 정순왕후는 영조 35년(1759년)에 영조와의 국혼으로 국모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영조는 첫 번째 왕비였던 정성왕후(貞聖王后) 서씨가 영조 33년(1757년)에 승하한 후 3년상이 끝나가 계비를 간택하였다. 당시 대신들은 곤위(坤位)가 오래 비었음을 걱정하면서 중전책봉을 건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왕비가 승하하면 삼년상을 치른 후에 다시 계비를 간택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왕비는 왕실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면서 백성들에게는 국모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었던 것이다. 계비간택을 주청 받았던 영조는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후 책봉을 교시하며 간택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정순왕후가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2) 경주 김문, 그 가문을 알아보자

정순왕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은 효종대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한 김홍욱의 후손으로 노론계 인물들이었다. 경주 김씨는 김홍욱의 증손인 김흥경(金興慶)이 영조대 영의정을 역임하였는데, 그는 노론의리를 앞세워 정계에서 활동하였다. 김흥경의 아들 김한신(金漢藎)은

영조의 2녀인 화순옹주(和順翁主)와 혼인하였다. 즉 경주 김씨는 부마를 배출한 가문이었다. 한편 정순왕후의 백부인 김한록(金漢錄)은 충청도 산림으로 사상적으로는 호론(湖論)의 맥을 이었던 인물이다. 김한록은 호론이었던 윤봉구(尹鳳九)·한원진(韓元震)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특히 한원진의 수제자로 이후 호락논쟁(湖洛論爭)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이렇듯 경주 김씨 가문은 정계와 학계에서 명망 있는 가문이었다. 정순왕후가 중전이 된 데에는 이러한 가문의 명망이 간택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순왕후의 친정, 즉 아버지 김한구의 직계 가족들은 정순왕후가 중전이 되기 이전에는 관직진출자가 없었다. 그렇지만 영조 39년(1763년)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귀주(金龜柱)가 문과에 급제한 것을 시작으로 종숙부(從叔父)인 김한기(金漢耆)·김한로(金漢老), 종제(從弟)인 김관주(金觀柱)가 잇달아 문과에 급제하게 되었다.

정순왕후의 친족들이 영조 39년 이후 잇달아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문의 산림적 처지가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귀주나 김관주는 김한록을 통해 학문적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에 문과에 급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중전 간택 이후 문과시험에 응시한 것은 산림적인 가풍에서 벗어나서 중전을 배출하고 외척 가문의 지위를 획득한 만큼 본격적이고 합법적으로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 문과를 통해 입사한 것으로 보여 진다.

경주 김씨 중 정계에서 활동하였던 중심인물은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였다. 김귀주는 문과 급제 후 빠르게 승진하였다. 급제한 후 10일도 안되어 도당록에 뽑히고 곧이어 부수찬(副修撰)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삼사의 직임과 승지를 거쳐 영조 45년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육조에 진출하였고, 이후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오르게 되었다. 또한 김귀주는 학문이 뛰어나서 종종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영조 40년(1764년) 문신제술에서 뽑힌 후 영조는 신하들과 소견한 자리에서 그의 학문의 뛰어남을 칭찬하였고, 함께하였던 대신들도 나이가 어림에도 학문이 깊다고 칭찬하였다. 김귀주의 학문은 호론의 종장인 김한록에게서 성리학을 배운 결과였다. 김귀주에 대한 영조의 총애도 남달랐다. 영조 45년에(1769년) 경연석상에서 영조는 김귀주에게 호피를 선사하였는데, 사관도 임금이 그를 총애한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김귀주는 영조 후반기에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한(洪鳳漢)과 대립하였다. 영조는 영조 31년 을해옥사 이후 척신·벌열 위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이때 홍봉한은 정국을 주도하였고, 그와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을 '부홍파(扶洪派)'라 하였다. 김귀주는 노론 당론을

고수하며 홍봉한을 배척하였다. 이렇듯 홍봉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홍파(攻洪派)'라 하였고, 부홍파는 북당(北黨), 공홍파는 남당(南黨)으로 불렸다. 김귀주가 홍봉한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혜경궁 홍씨는 "귀주는 제 집이 우리 집만 못한가를 꺼려하여 당치도 않은 일에 화를 내고 형상 못할 지경으로 모해하였다"고 하였다. 이렇듯 경주 김씨는 정순왕후가 중전이 되면서 정계에서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영조 말년 홍봉한과 대립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3) 300년만의 친잠례를 주관한 정순왕후

15세에 왕비가 된 정순왕후의 궁궐 생활은 그리 편안하지는 못하였을것으로 생각된다. 이유는 궁궐내에 50세가 넘은 영조의 후궁들, 정순왕후보다 10세가 더 많은 자녀들(사도세자, 혜경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조는 이럴수록 정순왕후의 위상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국가 의례를 통해서 정순왕후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영조는 1767년(영조 43) 선조이후 시행되지 않았던 친잠례(親蠶禮)를 300여년만에 치렀다. 친잠례는 왕비가 주관하는 의례로써, 왕비가 직접 뽕잎을 따서 누에에게 뽕잎을 먹이고, 성충이 된 누에에서 고치를 거두던 일련의 의식이다. 친잠례는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는 모범을 보여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위민관이 반영된 의례이다. 친잠례의 주체는 왕비이다. 그런 만큼 국왕과 왕비·왕실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의미가 담긴 의례였다.

정순왕후는 친잠례에서 세손빈 효의왕후와 혜경궁·후궁·공주 등 내명부를 거느리고 의례를 주관하였다. 친잠례를 치르기 전에 누에의 신 서릉씨(徐陵氏)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잠제(先蠶祭)를 먼저 치렀다. 영조 이전의 선잠제는 대개 신하가 대신하는 제사로 치러졌다. 그러나 이때에는 정순왕후가 직접 선잠제를 시행하였다. 정순왕후는 친잠례가 치러진 3월 10일 경복궁 강녕전 옛터에 효의왕후 이하 내명부를 거느리고 행차하여 선잠에게 작헌례(酌獻禮)로 선잠제를 지냈다. 그리고 뽕잎을 따기 위한 채상단(採桑壇)에 나아가서 친잠례를 실시하였다. 정순왕후가 주관하였던 친잠례는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경복궁 옛터에서 시행하여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과시하였으며, 친잠례와 선잠제를 함께 시행하였고, 정순왕후가 작헌례로 직접 선잠제를 시행한 것도 특징이다. 정순왕후가 직접 의식을 진행한 것은 국모로서 정순왕후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친잠례는 중전이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여성을 대표하여 치르는 의례인 만큼 중전의 위상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의례를 마친 후 정순왕후

는 세손빈과 혜경궁, 내외명부의 축하를 받았다. 이는 중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의식이었다. 영조가 300년만에 친잠례를 부활하여 경복궁 옛터에 나아가 성대하게 의례를 시행한 것은 국왕과 왕실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영조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친잠례가 중전이 주관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정순왕후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었다. 영조는 어린 나이에 중전이 되어 연장자들로 이루어진 내명부를 통솔해야 하는 정순왕후의 위상을 강화하고, 내명부의 수장은 나이는 어리지만 정순왕후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친잠례를 성대하게 치렀던 것이다. 이 역시 정순왕후를 배려하는 영조의 일면을 알 수 있게 한다.

2. 정조대,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시기

1) 정계에서 제거된 경주 김문

영조가 재위 52년 만에 승하하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正祖)가 즉위하면서 정순왕후는 왕대비(王大妃)가 되었다. 정순왕후는 영조 말기 정조가 세손으로서 지위가 위태로울 때 그를 보호해준바 있다. 그렇지만 정조는 정순왕후가 할머니이고, 효장세자를 추숭해서 그를 이어 즉위했기 때문에 마땅히 대왕대비가 되어야 함에도 왕대비로 정하였다. 더욱이 정조가 즉위한 후 영조 말년 정국의 중요 세력이었던 경주 김씨와 풍산 홍씨 두 외척가문은 정계에서 배제되었다. 정조가 즉위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척세력의 배제를 정치의 첫째 원칙으로 제시하고 척신들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정조는 어린 시절 아버지 사도세자가 '임오화변(壬午禍變)'으로 사망한 후 세손(世孫)에 책봉되었다. 그 후 영조가 나이가 들게 되자 세손에게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시키려 했는데, 여기에 척신들이 반대를 하였다. 영조말년 세손과 대립하였던 인물은 고모였던 화완옹주(和緩翁主)의 양자인 정후겸(鄭厚謙)이 있었다. 또한 홍봉한의 동생이며 정조에게는 작은 외할아버지인 홍인한(洪麟漢)은 세손대리청정을 반대하였다. 이들은 모두 정조가 즉위하자 탄핵을 받아 사사(賜死)당하였다.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귀주는 영조 48년 종제 김관주와 함께 홍봉한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

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때 상소는 영조 31년 영조가 편찮았을때 홍봉한이 질좋은 나삼(羅蔘)을 사용했어야 했음에도 품질이 떨어지는 호삼(糊蔘)을 사용했다고 그의 사람됨을 비난한 것이었다. 정조가 즉위한 후 김귀주는 홍봉한을 다시 공격하며 그때의 일을 거론하다가 흑산도로 귀양가게 되었다. 이때 정순왕후의 숙부 김한기, 김관주도 정계에서 퇴출되어 정조 년간 벼슬에 등용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경주 김씨 세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영조대에 새로운 척신으로 등장하였던 경주 김씨는 정조 즉위 후 정순왕후가 왕대비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정조의 강력한 의지로 재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2) 왕대비 정순왕후의 역할

정순왕후는 자신의 친족들의 정계에서 제거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렇지만 왕실의 가장 어른으로서 후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왕대비로서 내명부(內命婦)의 일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던 정순왕후로선 왕실에 후사가 없는 것은 큰 걱정거리였다. 이에 정순왕후는 여러 차례 후궁을 간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순왕후의 노력으로 정조는 의빈 성씨(宜嬪) 와의 사이에서 문효세자(文孝世子)를 얻을 수 있었다. 의빈성씨와 문효세자가 정조 10년 사망한 이후에는 박준원(朴準源)의 딸을 수빈(綏嬪)으로 간택하였다. 수빈 박씨는 후에 순조를 출산하였는데, 그가 정조의 왕통을 계승하였다. 후사를 얻기 위한 정순왕후의 행보는 왕실의 번영과 정조의 후사를 얻어 차후 왕위계승에서 정통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노력이었다. 정순왕후는 이렇듯 왕실의 가장 어른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반면에 정순왕후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언교(諺敎)를 하교하며 정치력을 행사하였다. 조선시대에 왕비나 대비의 정치참여는 수렴청정을 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수렴청정을 하지 않는 왕비나 대비의 정치적 활동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례로 숙종대 숙종의 모후였던 명성왕후 김씨는 조서를 내려 관료를 불러들여 비판을 받았다. 숙종이 14세에 즉위하여 나이가 어린 것은 맞지만 대비가 관여하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이 당시의 인식이었다. 정순왕후 역시 정조대에 수렴청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언교를 통해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었고, 정조와 대립하였다.

정순왕후와 정조의 대립은 정조의 이복동생 은언군 인(恩彦 君 裀)의 처분을 두고 발생하였다. 정조 10년에는 왕실 식구와 인척의 죽음이 잇달았다. 5월엔 왕세자 문효세자가 사망하

였고, 9월에는 세자의 생모인 의빈 성씨가 사망하였다. 의빈성씨는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하여 죽음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았다.

한편 윤7월에는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가 사망하였다. 여기에 11월엔 은언군 인의 아들 상계군 담(常溪君 湛)이 사망하였다. 이처럼 왕실 식구들과 오빠인 김귀주가 사망하는 비극이 연이어 일어나자 정순왕후는 이러한 죽음의 원인에 대해 하교를 내렸다.

12월에 내려진 정순왕후의 하교는 계속되는 죽음의 원인은 홍국영과 상계군(常溪君)에게 있으며, 그 배후는 은언군이라는 것이었다. 홍국영은 정조가 세손일 때 보필한 것을 계기로 정조 초년에 권력을 장악하고 그의 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원빈(元嬪)은 정조 3년에 사망하였고, 홍국영도 그후에 축출되었다. 홍국영은 은언군의 아들인 상계군 담을 원빈의 양자로 삼아서 추대하려 하였다 하여 상계군 담과 은언군은 역적으로 지목받았다. 정순왕후의 하교는 정조에게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은언군을 처벌하자는 것으로 이 문제를 두고 정조와 노골적으로 대립하였다.

정순왕후의 하교로 관료들은 은언군의 유배를 주장하였으나 정조는 쉽게 승낙하지 않았다. 결국 12월 28일 은언군은 강화도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은언군을 위해 조정 몰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즉 사람을 미리 보내 좋은 백성의 집을 구입하여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으며, 귀양지가 도성에서 가까운 강화도였던 것도 동생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정조는 은언군을 한양 근교로 불러 만나 형제의 정을 나누었다.

이러한 정조의 행동에 대해 정순왕후는 크게 반발하였다. 정순왕후는 언문하교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탕약을 거부하였고, 공상(供上)을 받지 않으며 사제(私第)에 나가 살겠다고 하였다. 또한 신료들도 정조의 행보에 대해 정순왕후의 뜻을 따라 반발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나의 오늘 심정으로서는 어찌 지나친 거조임을 돌아볼 겨를이 있겠는가. 그로 하여금 성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일이 불가할 게 뭐가 있길 래 경들이 이러는가. 나로 하여금 천고에 윤리를 손상하는 일을 저지르도록 할 셈인가. 내 곧장 그가 간 데까지 따라가겠다. 비록 강화라도 그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할 것을 명하였다. 심지어 정조는 정순왕후의 명이 있더라도 따를 수 없다며 정순왕후와 대립하였다.

은언군을 둘러싼 정순왕후와 정조의 대립은 공의(公義)를 강조하는 정순왕후와 사의(私義)를 앞세운 정조의 대립이었다. 정조의 행보가 신료들의 반발을 산 것은 은언군이 상계군

담의 아버지로 역모의 주모자로 죄를 입었으나 정조는 동생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죄인과 다른 특혜를 베풀었던데 있다. 정순왕후는 사적으로는 국왕의 동생이지만, 역적으로 지목받은 인물인 만큼 국법을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공론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였다. 정순왕후는 또한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국왕의 공과 사의 구분이 중요함을 강조하려 정치력을 발휘했고 그 과정에서 정조와 대립하였던 것이다.

정조대 정순왕후는 친족들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김귀주가 사망하는 등 개인적으로 슬픔을 겪었다. 척신을 배제한다고는 하나 정조는 이 또한 공정하지 못하였다. 김귀주는 흑산도로 유배된 반면 김귀주와 대립하였던 홍봉한은 혜경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은언군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정순왕후는 공의를 앞세워 정조와 대립하는 정치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정조년간은 정순왕후에게 와신상담의 시기였다. 그러나 이는 정조가 승하하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정국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3. 수렴청정을 알아보자

1) 수렴청정은 무엇인가?

수렴청정의 본래 명칭은 수렴동청정(垂簾同聽政)이다. 수렴은 발을 드리운다는 뜻이고 청정은 정사를 듣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렴동청정은 왕과 함께 발을 드리우고 정치를 한다는 뜻이 된다. 흔히 수렴청정 하면 왕비가 발 뒤에서 전권을 휘두르고 어린 왕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왔다. 그러나 명칭 자체만 보더라도 수렴청정은 정치를 독단하거나, 왕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을 치는 이유는 조선이 유교국가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간 내외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이것이 내외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왕비가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조정에는 신하들이 있기 때문에 신하들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업무를 보는 것은 내외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왕비 앞에 발을 치게 된 것이다.

2) 수렴청정은 언제 시행되었나?

수렴청정은 즉위하는 왕이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 일 때 시행하였다. 조선시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왕조국가였다. 왕조국가의 수장은 국왕인데, 그 국왕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세습되는 것이다. 세습이 되다 보니 때로는 나이가 어린 왕이 즉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다음의 〈 표 1 〉은 조선시대 시행되었던 수렴청정을 정리한 것이다.

〈 표 1 〉 조선시대 수렴청정의 시행[24]

왕	수렴청정 시행 大妃	즉위시 왕의 연령	수렴청정 기간	철렴시 왕의 연령	국왕과 관계	왕의 모후
成宗	世祖妃 貞熹王后 尹氏	13세	8년	20세	祖母	德宗妃 昭惠王后
明宗	中宗妃 文定王后 尹氏	12세	9년	20세	母	中宗妃 文定王后
宣祖	明宗妃 仁順王后 沈氏	16세	8개월	17세	兄嫂(異腹)	河東府夫人 鄭氏
純祖	英祖妃 貞純王后 金氏	11세	4년	14세	曾祖母	綏嬪朴氏/孝懿王后
憲宗	純祖妃 純元王后 金氏	8세	7년	14세	祖母	翼宗妃 神貞王后
哲宗	純祖妃 純元王后 金氏	19세	3년	21세	母(立後)	龍城府大夫人 廉氏
高宗	翼宗妃 神貞王后 趙氏	12세	4년	15세	母(立後)	驪興府大夫人 閔氏

수렴청정은 즉위하는 왕의 나이가 어릴 때 시행되었다. 그 나이는 왕대별로 차이가 있다. 최초로 수렴청정이 시행되었던 것은 성종이 13세에 즉위했을 때였다. 정희왕후는 성종이 20세가 되자 철렴을 하교하였다. 이는 선례가 되어 명종이 12세에 즉위하자 20세가 될 때까지 9년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를 보면 왕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를 20세로 여겼던 것이다. 선조의 수렴청정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가 앞선 성종이나 명종보다 연령이 높았던 것, 수렴청정을 왕대비였던 인순왕후가 했던 것과 함께 8개월로 짧았던 것이다. 선조는 세자로 책봉된 상태가 아니었고,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평상시 명종의 뜻을 인순왕후가 전하여 왕위를 계승하였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바로 친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으나, 기간은 8개월로 가장 짧았다. 이후 수렴청정은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왕이 즉위하지 않은 것도 있으나, 숙종처럼 14세

24) 임혜련, 2012, 「한국사에서 攝政·垂簾聽政權의 변화 양상」, 『한국사상과문화』 62, 196쪽을 참고하여 보완함

에 즉위하였어도 수렴청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숙종이 원자·세자로서 후계 수업을 잘 받았던 점, 숙종 자체의 자질, 그리고 당시의 정치세력들의 관계속에 수렴청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9세기에 접어들며 연이어 수렴청정이 시행되었다.

1800년 즉위한 순조는 11세였고, 이에 대왕대비였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임진왜란 전 시행된 바 있던 수렴청정이 19세기에 와서 다시 시행된 것이다. 순조대에는 수렴청정이 제도적으로도 완비되며 이후 19세기 수렴청정의 지침이 되었다. 정순왕후는 순조가 14세였던 순조 3년 12월 28일 철렴을 하교 하며 새해부터는 수렴청정의 칭호를 쓰지 않으려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순조는 15세부터 친정을 할 수 있었다. 15세부터 친정을 하도록 한 것은 앞서 숙종이 14세에 즉위하면서 친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순조는 정조가 생전에 세자를 책봉하면서 1804년이 되면 세자에게 선위하고 화성으로 가서 상왕으로 지내겠다는 구상을 한 것도 이유였다. 정조가 승하하지 않았다면 순조가 15세가 되면 왕위를 물려주려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15세부터 친정할 수 있도록 철렴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이후 헌종대에 선례가 되었다. 헌종은 8세에 즉위하였다. 조선시대 즉위한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다. 이렇게 된 것은 순조의 세자로 대리청정까지 하던 효명세자가 급서하고, 이후 순조도 승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헌종대 수렴청정을 하였던 순원왕후는 정순왕후의 선례를 따라 수렴청정의 기간은 길었으나 역시 15세부터 친정을 할 수 있었다. 이는 고종도 마찬가지였다. 고종은 12세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대왕대비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계획된 철렴은 아니었지만 고종이 15세가 되던 해에 수렴청정에서 물러나면서 이때부터 고종이 친정을 하였다. 다만 철종은 19세라는 상대적으로 장성한 나이에 즉위했음에도 수렴청정이 시행되었다. 이는 철종이 강화도에서 지내다 즉위하여서 군왕의 수업이 전무했기 때문이었다. 이토록 수렴청정은 주로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왕대비가 왕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여 국왕이 성장하여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때까지 왕조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정치 운영 방식인 것이다.

3) 수렴청정은 누가 하는가?

조선에서 수렴청정은 누가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제까지 수렴청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것은 섭정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섭정(攝政)은 대신 정치를 한다는 뜻이다. 왕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수렴청정과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섭정이 시행되었다. 고구려에서는 태조왕(太祖王)이 7세에 즉위하자 어머니였던 태후가 섭정을 하였다. 신라에서는 진흥왕(眞興王)이 역시 7세에 즉위하자 모후였던 법흥왕의 딸 지소태후(只召太后)가 섭정을 하였다. 신라 하대 혜공왕(惠恭王)이 8세에 즉위하자 어머니였던 만월부인(滿月夫人)이 섭정을 하였다. 이렇듯 삼국시대의 섭정은 모두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모두 그 어머니였던 모후들이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고려에서도 역시 어린 왕이 즉위한 경우 왕의 어머니가 섭정을 하였다. 경종(景宗)의 왕비였던 헌애왕태후 황보씨(獻哀王太后 皇甫氏), 곧 천추태후는 아들 목종(穆宗)이 18세에 즉위하자 섭정을 하였다. 선종(宣宗)의 왕비였던 사숙태후(思肅太后) 이씨도 아들 헌종(獻宗)이 10세에 즉위하였을 때 섭정을 하였다. 한편 원간섭기에는 충목왕과 충정왕대에 충혜왕의 왕비이며 원나라 공주였던 덕녕공주(德寧公主)가 섭정을 하였다. 덕녕공주는 아들 충목왕(忠穆王)이 8세에 즉위하자 섭정을 하였다. 이때 섭정은 관료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덕녕공주는 충목왕 사후 12세의 충정왕(忠定王)이 즉위하자 다시 섭정을 하였다. 그러나 충정왕대에는 덕녕공주의 섭정이 관료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는 충정왕의 모후가 아니면서 정치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왕의 어머니로서 어린 아들을 대신한 섭정은 반발이 없었으나 모후가 아닌 경우에는 관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곧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왕의 모후가 섭정을 하며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보호한다는 논리속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즉위한 어린 왕과 섭정을 하는 모후의 관계가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사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고려시대까지는 어머니로서 섭정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수렴청정은 섭정과는 다르다. 왕비가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정치를 독단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조정에 나아가서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렴청정은 왕의 어머니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왕대비(大王大妃)나 왕대비(王大妃)가 하는 것이었다. 이는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사적 관계가 지양되고, 왕실에서 가장 어른에게 어린 국왕을 도와 종사를 지켜갈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때 대왕대비는

왕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이미 승하한 선왕(先王)의 왕비로서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다. 대왕대비나 왕대비는 선왕의 왕비로서 국모였고, 이때 함께 왕조를 이끌어 갔으며, 통치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수렴청정을 하는 대비들은 즉위한 어린 왕과 가족으로 사적 관계 속에 정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선왕의 왕비로서 왕조를 유지할 임무를 가지고 수렴청정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고려시대까지의 사적 관계가 섭정의 명분이었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공적 관계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렴청정은 섭정에서 발전한 정치운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4.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이해하기

1) 수렴청정의 주인공이 되다.

정조가 재위 24년만에 승하하자 11세의 세자가 즉위하였다. 그가 순조이다. 정조가 승하한 다음날 조정의 대신들은 정순왕후에게 수렴청정을 하도록 청하였다. 수렴청정은 정치제도이면서 운영형태이다. 왕이 어린 나이, 대개 미성년에 즉위할 경우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왕대비나 왕대비가 왕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수렴동청정(垂簾同聽政)'이라고 한다. 이때에 대왕대비와 신하들 사이에는 발을 쳤는데, 이는 내외법에 의하여 남성인 신하들과 여성인 대왕대비가 직접 대면하는 것을 피하는 의미가 있다. 어린 왕이 즉위하는 것은 대개 선왕이 생각보다 일찍 승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 즉위한 왕은 왕이 될 수업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국정을 스스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수렴청정은 어린 왕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가 스스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순왕후는 순조 3년까지 4년간 수렴청정의 주인공이 되어 순조와 함께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수장이 된 것이다.

2) '수렴청정절목'으로 완성된 수렴청정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된 순조 초기에는 수렴청정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 즉 '수렴청정절목'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게된 것이다. '수렴청정절목'은 이제까지 시행되었던 내용들을 참고하여 수렴청정할 때 절차·방법 및 대왕대비의 지위 등을 규정한 것이며, 수렴청정 시행의 지침이었다. 수렴청정은 정상적인 국정운영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국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을 때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차선책정도는 되었던 것이다. 대개 수렴청정은 왕비가 어린 왕을 기회로 삼아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수렴청정절목'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대왕대비가 정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러한 정치참여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인받은 것이다.

수렴청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 발을 치고 그 뒤에서 국정을 독점하고, 어린 왕은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것, 즉 대왕대비가 왕을 대신하여 정무를 처결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왕대비는 아무 때나 발을 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정기적으로는 차대(次對)라는 회의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한 달에 6번 개최되었다. 비정기적으로는 과거에 급제하거나 지방으로 떠나는 관료들을 만날 때, 또는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신하들을 만났으나 그 빈도는 높지 않았다. 또한 수렴청정기에 왕은 허수아비처럼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어려도 어디까지 조선왕조의 수장은 국왕이었다. 그런 만큼 왕과 대왕대비는 업무를 분담하였다. 관료 인사에서도 왕은 신료들의 삼망에 대해 낙점하는 방법으로, 대왕대비는 특지나 중비로 중요한 인사를 결정하였다. 신하들과 만나 국정을 논의하는 차대에서도 왕은 보고사항에 대해 윤허하고, 대왕대비는 죄인 처벌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하교하였다. 왕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도 있었다. 상소는 왕이 직접 신하들에게 답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대왕대비에게 물어서 결정하였다. 경연도 대왕대비는 참석하지 않아 왕과 신하들이 직접 만나 공부하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수렴청정은 왕이 성장하게 되면 대왕대비가 물러나는 '철렴환정(撤簾還政)'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대왕대비가 권력에 욕심이 없으며, 어린 왕을 성장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수렴청정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절차이다. 또한 국가의 수반인 왕에게 국정운영권을 돌려주는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은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에 마련되었고, 이후 19세기의 수렴청정은 모두 이를 따라 시행되었다. 그런 만큼 제도적으로 완성된 것이었다.

3) 정치의 달인 정순왕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던 순조 초기에는 정조대의 정국이 벽파를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정순왕후였으나 표면적으로는 명분을 가지고 시행한 것이며, 신하들의 논의를 이끌어내면서 처리하였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순왕후는 정치의 달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정순왕후는 선왕의 유지(遺旨)를 명분으로 삼아 의리를 재해석하였다. 이로 인해 정국은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선왕은 정조가 아닌 영조였다. 정순왕후의 권위는 영조의 배우자로서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정순왕후는 사도세자가 죽은 '임오화변(壬午禍變)'에서 영조의 처분은 타당했다고 하였다. 이는 정조대의 해석을 뒤집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정조대에 임오의리를 충이라 했던 것이 역이 되는 의리의 전환이 일어났고, 이를 근거로 정조대의 결정에 대한 반동이 가능하도록 정치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정순왕후는 영조의 의리로 정조대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다. 우선 이로 인해 정조대에 척신 배제 정책으로 제거되었던 경주 김씨들이 다시 정계에 등장할 수 있었다.

정순왕후는 이어 정조의 친인척이었던 은언군과 홍낙임을 사사하였다. 은언군은 정조대에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고, 홍낙임은 혜경궁 홍씨의 동생이었으나 그가 사도세자를 추숭하자고 주장한 영남 만인소 사건과 관계있으며, 신유사옥과 연관된다 하여 죽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주 김씨와 혜경궁 홍씨 집안과의 안좋은 관계가 바탕이 되었다. 또한 정순왕후는 정조의 측근이었던 홍국영과 정민시의 관작을 추탈했고, 서유린은 역시 영남 만인소에 동조했다는 죄목으로 귀양 갔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정조대에 특별대우를 받았던 윤행임은 선왕의 은총을 빙자하여 권세를 농단하였다 하여 사사하였다. 여기에 정조대 진출이 활발했던 남인 청류들은 신유사옥으로 제거하였다. 이렇듯 정조대에 활동하였던 친정조 세력들을 의리를 바꾸어서 제거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정순왕후는 이러한 정치적 변동을 가져오는데 방법상으로도 정치의 달인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우선 정순왕후의 뜻을 한글로 써서 제시하고 이를 신하들에게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때 영의정은 벽파 심환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순왕후의 뜻이 심환지를 통해 순조와 논의되고 뜻대로 결정된 가능성이 높았다. 심환지와 순조가 논의를 하면 이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수렴청정절목'의 중죄인 처벌은 직접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순왕후가 처결하는 방법이었다. 물론 그 결과는 급격한 정치세력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지만, 방법에서 정순왕후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랜 세월 궁중에 살면서 체득한 정순왕후의 정치력이라 할 수 있다.

10월 30일

왕자와 공주의 살림나기

정수환 _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왕자와 공주의 살림나기

정수환 _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문학박사

1. 왕과 왕비도 아버지와 어머니

출합(出閤)은 왕자, 공주 및 옹주가 장성하여 가례 후 궁을 나가 사궁(私宮)에 거처하는 것을 지칭한다. '합(閤)'은 곧 '합문(閤門)'을 이르는 것으로, 궁궐에서 특정한 공간이나 영역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궁궐에서 왕실의 주요 인물들에게 내외(內外)와 공사(公私)의 경계로 합문이 존재했다. 따라서 왕자녀는 합문을 나가게 되면서 사적영역에 거처하게 되는 것이다.

출합과 그에 따른 왕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문제는 조선개국과 동시에 논의되기 시작했다. 발단은 이성계의 자녀에 대해 제택(第宅)을 포함한 경제적 기반 분재에서 시작했다. 실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서는 1401년『태조사급며치가대문서(太祖賜給旀致家垈文書)』이다.

> 동부에 속해 있는 향방동(香房洞)의 빈 집터[空垈]는 세상을 떠난 재신 허금(許錦, 1340~1388)의 집인데 다듬은 돌과 함께 맞바꾸었다. [집을 짓기 위한] 재목(材木)은 사내종을 시켜 베어와 집을 지었다. [집은] 몸채 두 칸의 앞과 뒤에 툇마루가 있는 기와지붕이다. 동쪽에 위치한 살림집 한 칸은 기와지붕, 부엌 한 칸도 기와지붕, 주방 삼 칸은 기와지붕이다. 고방(庫房) 세 칸은 앞과 뒤에 툇마루가 있는 초가지붕이며, 누상고(樓上庫) 두 칸은 초가지붕이다. 안사랑 네 칸은 초가지붕, 서쪽에 위치한 방 두 칸은 앞과 뒤에 툇마루가 있는 초가지붕이다. 남쪽에 위치한 마루방 세 칸은 앞에 툇마루가 있는 초가지붕이며, 누상고 세 칸은 기와지붕이다. [이들 집들을] 합하여 24칸 등을 교역한 본문기(本文記) 모두 허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문서는 태조가 그의 다섯 번째 딸 며치(旀致)가 당성위(唐城尉) 홍해(洪海, ?~?)에게 출가하여 출합하는 과정에 제택을 허급하며 작성한 분재기이다. 분재기는 사가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분재하는 문서와 동일한 구조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사가생활을 위한 가사를 별급한 것으로 초가와 기와로 된 24칸 규모의 출합궁에 해당했다. 태조가 고려 말부터 소유했던 함흥일대의 방대한 전답과 노비를 왕실재산의 기반으로 편입시켰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 자산을 활용하여 딸의 출합을 기념한 제택을 분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의 개국과 동시에 출합에 따르는 제택의 사여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 초기 경혜공주의 살림나기

출합하는 왕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둘러싼 논쟁은 문종대 경혜공주의 출합에서 본격화 되었다. 세종은 그의 아들 문종은 물론 손자·녀에 대한 혼사를 직접 주관했다. 문종대 제기된 출합 왕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발단은 세종에서 출발한다. 세종은 아들 영응대군(永膺大君,1434~1467)의 처를 해주정씨 정충경의 셋째 딸[춘성부부인]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혼사가 있은 6개월 뒤 1450년(세종 32)에 그의 손녀 딸 경혜공주(敬惠公主, 1436~1473)도 정충경의 큰 아들 정종(鄭悰, ?~1461)에게 출가시켰다.

경혜공주의 출합에서 왕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문제가 점화되었다. 경혜공주의 혼사가 정해지자, 문종은 즉위와 동시에 공주의 출합을 위해 새로이 집을 짓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한성의 양덕방(陽德坊)에 있는 30여 구(區)를 철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왕(문종)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영양위가 거처하는 집은 곧 사적으로 갖춘 것이지 공적으로 준 것은 아니다. 동시에 기울어 위태롭고 비좁으므로 할 수 없이 지어야 했다. 또한 부마 관례에는 집 한 채를 지어서준다 . 만일 만들어 그것을 준다면 모름지기 좋은 땅을 골라야 하는데 다시 어디서 빈 땅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나는 어쩔 수 없이 철거하는 집이 다만 7~8구라 들었는데, 어찌 치우는 것이 30여 구에 이를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만일 거기에 폐단이 있거든 다시금 살펴서 啓를 올려라?"(『문종실록』권7, 문종 1년 4월 기사.)

사헌부지평 윤면(尹沔)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문종의 입장이었다. 그는 영양위(寧陽尉) 정종의 집을 짓기 위해 민가 30가를 이전 시키는데 따른 문제와 더불어 이미 사가가 존재 하는데 불구하고 새로이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종은 출합하는 공주의 제택을 공가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전례임을 들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종의 출합궁 마련 노력은 단종에 이르러 완료될 수 있었다.

출합한 경혜공주에 대한 제택사여 외에도 경제적 후원은 지속되었다.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은 영양위 정종에게 노비 50구와 가사 1坐를 주었다. 특히, 단종은 동생 경혜공주에 대한 경제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1453년(단종 1) 한양 인근 살곶이(箭串) 목장에 가까운 전지를 하사하는 것은 물론, 이듬해에는 노비 10구와 과전(科田) 100결을 비롯하여 말 1필을 내리기도 했다. 이 후에도 단종은 난신(亂臣)으로부터 적몰한 각도에 산재한 노비 5구를 경혜공주에게 사급했다.

정종과 경혜공주의 경제적 기반은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 정종은 단종복위를 도모하다 실패하자 '양근→수원→통진→광주(光州)'로 유배지가 변경되었다. 여기에는 그가 왕실일원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기반이 산재한 이들 지역을 배소(配所)로 정했기 때문 이었다. 정종을 통진으로 유배 보낸 것은 그곳에 있던 농장 때문이었다. 양근과 광주 등지로 귀양을 보낸 것도 이들 지역에 토지와 노비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정종과 경혜공주는 왕실로부터 사여 받은 토지와 노비가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

정종이 사육신사건(1456)에 연루되어 유배, 거열형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왕실로부터 경혜공주에 대한 경제적 후원이 이어졌다. 세조는 말년에 경혜공주에게 몰수했던 가산을 환급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후에도 1461년(세조 7) 경혜공주에게 노비 50구와 더불어 평생토록 1품녹(品祿)을 내렸으며, 제택(第宅)도 수차례 하사했다. 왕실로부터 출합 공주에 대한 후원이 정치적 외풍 속에서도 끊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를 비롯하여 문종의 후궁 숙빈홍씨(肅嬪洪氏, 1418~?)도 경혜공주를 왕실 일원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분재했다. 정희왕후는 문종의 적녀(嫡女) 경혜공주에게 친히 가사와 전민(田民)을 주었다. 왕실 일원에 대한 가치는 1468년(세조 14) 숙빈홍씨가 경혜공주에게 재산을 분재한『경혜공주 별급문기』에 잘 서술되어 있다.

> 공주께서는 문종의 오직 하나뿐인 공주로서 이번에 특별히 왕의 은전을 입어서 복직되어 입궁하라 하시니 기쁜 마음이 이로서 극진합니다. 제가 받은 여자종 (중간 생략) 노비를 하사 받을 때의 사패 문서 모두를 영영 올립니다. 그러니 지키고 보전하여 언제까지나 아들과 손자에게 전하여 아주 오랫동안 부리고 사용하십시오.(후략)

분재기의 배경은 세조의 특지에 따라 경혜공주가 왕실의 일원으로 궁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데 있었다. 문서의 서두에는 문종의 유일한 혈손으로 밝혀 왕실에서의 특별한 의미를 암시했다. 분재 내역은 노 10구, 비 12구였다. 이 분재기는 토지와 노비가 왕실재산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비록 출합하였고 정치적 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일원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3. 조선 전기 왕자녀 살림지원

연산군 때 내수사와 국가재원을 이용한 왕실 출합 지원에 대한 논쟁이 거듭되었다. 연산군은 진성대군(晉城大君)의 출합을 위한 지원을 내수사는 물론 국가 재정에서 준비하게 했다.

> 진성대군이 출합할 때 의례히 곡식 7천 석을 사급해야 한다. 그런데 내수사에 저축한 것이 넉넉하지 않아 국곡(國穀)으로 채워 주려고 하니 그것을 정승(政丞) 등에게 물어 보라.(『연산군일기』권36, 연산군 6년 2월 신묘.)

연산군은 내수사는 물론 국곡을 동원하여 진성대군의 출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주장했으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했다. 성종조 남효온이 제기했던 내수사 개편과 국가재원을 활용한 출합 지원은 전면적 실시에 한계가 있었다.

내수사를 통한 군(君)과 옹주(翁主)의 출합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내수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 평소에 내전에서 쓰는 것과 두 대비전(大妃殿)에 연례대로 진상하는 것, 공주와 여러 군 그리고 옹주가 출합할 때 의례히 하사하는 쌀과 싸라기는 내수사에 남겨진 것을 다 쓰고도 모자랍니다. 평안도의 내수사 노로부터 받는 잡곡 2천석을 각기 관창(官倉)에 들이고 그것으로 경창(京倉)의 미(米)를 바꾸어 쓰도록 명령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연산군일기』권42, 연산군 8년 2월 계축.)

출합에 소요되는 경비는 내수사를 통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내수사에서도 출합과 관련한 재원의 마련을 위해 움직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관사(官司)와 고을의 장인을 내수사에 소속 시켰다. 여러 군과 옹주들의 출합에 소요되는 집기를 내수사를 통해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내수사 외에 관사를 통한 출합 지원이 이루어졌다. 연산군은 휘순옹주(徽順公主)가 출합할 때 수주(水紬) 50필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체자(髢子) 200개를 각도에 배정하여 휘순공주의 출합에 보태도록 했다. 그리고 휘순공주의 출합에 준례에 따라 벼 8천섬을 내리고자 했다. 그러나 내수사의 재원이 부족하자 호조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연산군 때는 내수사 중심의 출합을 위한 재원 마련 원칙이 있었으나 범위를 벗어나는 규모의 출합 왕자녀에 대한 후원도 있었다.

중종 이후 출합재원에 대한 규례가 본격 논의되고 정비되기 시작했다. 출합궁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한 재론이 대두했다. 발단은 성종 때 왕자들이 출합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해 장기간 궁에 머물게 되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군의 제택이 화려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왕자와 부마들의 집수리를 위한 역사가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었다. 양녕대군의 집이 사치스러운 문제와 더불어 월산대군은 이궁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논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선에 소요되는 목재도 화매(和賣)하지 않고 민간의 목재를 강탈하거나 선재(船材)를 위한 재목을 이곳에 공급하고 있었다. 홍문관 부제학 서후(徐厚, ? ~ ?)는 상소에서 왕자녀의 제택이 부득이한 일이지만 혼인의 선후에 따라 조정할 것을 먼저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월산대군의 집은 왕실에서 대대로 대군에게 물려주어 차자나 서손에게 주지 않은 관행이 있었음에도 옹주에게 물려 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중종은 비답을 내려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 말하자면 양녕대군의 저택은 귀산군(龜山君)의 집이 틀림없다. 앞날 선공감 감역이 승정원에 '반드시 근방의 세 집을 아울러 넣은 뒤에 라야 이루어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해당 관아에 진정으로 바라는 바에 따라서 무역 하도록 명했으니, 이 또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인 것이다. 월산대군의 집은 비록 대군의 집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지금 대군이 없이 오랫동안 빈집이 되었다. 만일 왕자녀에게 주지 않는다면 몇 해 지나지 않아 반드시 기울어 무너지는데 이르러 오히려 쓸모없이 될 것이다.
> (『중종실록』권44, 중종 17년 5월 임술.)

중종은 양녕대군의 집이 귀산군의 집이라 강조했다. 여기에는 금원군이 집이 없어 이를 수리해 주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는 왕자녀들에게 장유의 순서대로 집을 나누어주는 전례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왕자녀들이 무한정 금중(禁中)에 있을 수 없고 부득이 집을 지어준 다음에야 출합하는 것이 준례임을 강조했다.

4. 조선 후기 왕자녀 살림 지원 범위

1) 제택의 영건과 사여

조선후기 출합과 제택의 사여에 대한 논쟁은 인조조 이래, 효종과 그의 왕자녀에 대한 출합조치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 되었다.

인조 때 정명공주(貞明公主, 1603 ~ 1685)의 출합에서 제택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명공주는 선조와 인목왕후 김씨(仁穆王后 金氏, 1584 ~ 1632)의 소생으로 1623년(인조1)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1606 ~ 1672)와 가례 후 출합하였다. 인조는 정명공주 출합 때 제공된 제택에 대해 호조로 하여금 지속적 수리를 명했다. 이에 대해 장령 조정호(趙廷虎,1572 ~ 1647)는 조종조에 없는 규례일 뿐만 아니라 후일의 전례로 남을 가능을 제기하면서 반대했다. 헌납 윤지(尹墀, 1600 ~ 1644)도 출합에 하사한 제택을 사가로 규정하고 호조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조 했다. 이에 대한 인조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 공주의 가사를 한번 수리하는 것은 조금도 안될 것이 없다. 너희들이 '부를 이어주어 지나침을 더한다[繼富益過]'는 등의 맞지 않는 말로써 굳게 업신여기는 것을 그치지 않으니 유달리 매우 괴상하다 하겠다.
> (『승정원일기』, 인조 4년 7월 정축)

인조는 출합 때 제공된 가사에 대한 수리 및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집의 이경여(李敬輿, 1585 ~ 1657)는 인조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친애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데 어찌하여 손상을 입겠습니까?"라고 하여 인조의 입장을 옹호했다.

현종 때 효종의 다섯 공주의 출합이 있고 그에 따른 출합궁의 영건이 수반되면서 관사를 동원한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정언 윤경교(尹敬敎, 1632 ~ 1691)와 이휘계(李徽啓)가 주장한 의견은 효종 소생의 다섯 공주의 출합 과정에서 제택을 새로 짓거나 공해를 옮겨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언급했다. 또한 출합을 위한 제택 규모가 법전에 규정된 50칸을 초과하고자 하는 왕실의 의견을 견제하고자 했다. 제택의 영건과 지원에 대한 대신의 주장에 대한 현종의 입장은 확고했다.

> 이러한 혐의를 피하기 위한 말[避辭]을 살피니 장황한 이야기의 숨은 의도가 놀랍고 기이한 것이 아주 심하여 또한 비웃을 만하다. 그 가운데서도 옮길[遷移] 즈음 마다 지어서 주도록 한 것은 곧 다만 예전에 규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도리를 계승하기 어려울까 두렵다고 한 것에서는 더욱 가소롭도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대군과 공주 이하는 옮기는 일이 전혀 없었고, 옮기는 데에도 또한 오늘의 일과 같은 것이 있었다고 듣지 못했다. 예전 규범을 계승하기 어렵다는 것도 어느 곳에다가 붙여서 헛되이 스스로 옳다고 하려고 하며, 또 그 옳지 못함을 꾸미니 이것은 내가 사무치도록 미워하는 것이다.
>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5월 무오.)

현종은 출합 할 때 제택을 영건해주는데 대한 대신들이 제기한 논리에 대해 직설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 그의 반대 논리는 예전 전례에 출합 제택을 천이(遷移)한 전례가 없이 새로이 영건해 주는 것이 전례인데도 중신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종의 강경론에 따라 대신들은 여러 공주의 동시 출합으로 공역이 증대한데 따른 문제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리

고 출합 제택을 공해를 헐어서 지어주기 보다는 재력을 지원하여 영조(營造) 함하는 것이 재원을 절약하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종 때 공주들의 출합 과정에서 왕실과 신료의 입장 차이에 대한 논란의 결과 숙종 때 절충이 이루어졌다. 숙종은 출합 제택의 사급을 호조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 대체로 궁가가 출합을 할 때에는 땅이 마땅한지를 살펴서 신궁(新宮)을 지어서 준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아직 출합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예전의 관례로 해서 구궁(舊宮)을 허가해 주고 이것으로 살림살이를 갖추어 두게 하는 곳으로 삼게 한다. 앞 날 사들인 전석동궁(磚石洞宮)은 많게는 1,000여 금에 이르지만 다만 아직 값을 주지는 않았으며 집의 간살이 좁다. 그러므로 궁가를 더 사려고 하는데 그 집이 또한 각기 6 ~ 700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수사는 값을 내어올 데가 없어 호조로부터 상세히 실제 액수를 물은 뒤에 액수에 준해서 해당 궁에 실어 보내는 것이 좋겠다.
>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11월 임술.)

숙종은 출합에 신궁을 지어주는 것이 상례이며, 출합하기 전이라도 구궁을 주어 살림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것이 전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석동궁을 매입하고 또한 확장을 목적으로 민가를 매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내수사가 아닌 호조를 통해 조달하도록 했다.

2) 출합 물력

인조 때 선조의 왕자녀에 대한 출합과 그에 따른 재력 지원이 논의되었다. 1623년(인조 1) 선조와 인목왕후(仁穆王后, 1584 ~ 1632)의 첫째 딸 정명공주(貞明公主, 1603 ~ 1685)의 출합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소용되는 물력에 대한 변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장령 조정호(趙廷虎, 1572 ~ 1647)는 출합에 소용되는 세세한 물력을 아문을 통해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명공주의 출합을 위한 지원이 논의된 물종은 석자(席子)가 1,000여장, 지지(紙地) 200여권, 능화(菱花)·유둔(油芚) 등 이었다.

효종은 왕자녀 출합 후 필요한 물력을 관사를 통해 지원하도록 했다. 그의 다섯째 아들 숭선군(崇善君, ? ~ 1690)의 출합은 차녀 숙안공주(淑安公主, 1636 ~ 1697)의 전례에 따르도록 했

다. 출합에 소요되는 물종 중 부족한 내용도 풍년을 기다려 갖추어 채워 주도록 예조에 초기(草記)했다. 효종은 셋째 딸 숙명공주(淑明公主, 1640 ~ 1699)의 출합 후 지속적으로 물력을 보충하거나 지원하도록 했다. 이러한 효종의 전교에 대한 예조의 입장은 아래와 같았다.

> 물건 중에 기명은 당연히 다가오는 봄에 다시 아뢰어 거행하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혹시 아침과 저녁으로 거를 수 없는 물건은 이제 곧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장(鹽醬), 유청(油淸), 어염(魚鹽)등과 같은 물종은 갖추어서 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두(米豆)와 면포도 아울러 다가오는 봄을 기다릴까요? 도배(塗褙)와 포진(鋪陳) 등의 일은 해당 아문에 명해서 전례대로 거행함이 어떻습니까?
> (『승정원일기』, 효종 3년 10월 경신.)

예조는 출합 왕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애용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했다. 물력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일용에 긴급한 물력과 제택에 대한 도배 등의 일은 때에 맞추어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봄에 갖출 물종과 우선 지급해야 할 물종을 구분하여 해사(該司)에서 갖추도록 했다.

숙종 조에는 출합 왕자녀에 대한 과록(科祿) 지급이 논의 되었다. 1680년(숙종 6)에 12월 18일 명안공주(明安公主, 1667 ~ 1687)의 출합이 있었다. 숙종은 출합하기 전 녹(祿)을 내리는 전례에 따라 명안공주에게 녹봉을 지급하려했다. 이 과정에서 명안공주와 부마에 대한 과록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 해창위의 전례를 살펴보니, 경신년(1680) 2월 18일 길례를 한 뒤에 같은 달 28일 내린 교서에서 해창위의 녹은 아직 출합하기 전이니 따라서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출합하기 전에 녹을 주지 않는 것은 또한 예전의 관례가 있으니 지금도 여기에 의거해서 해야 합니다.
> (『승정원일기』, 영조 8년 12월 갑술)

해창위 오태주와 명안공주가 길례 후 궁에 머무는 기간 동안 해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녹을 내지리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길례 후 출합 전 까지 공주와 옹주에게만 녹을 내린 규례에 따라 명안공주에게만 녹을 내려야 했다. 여기에 대해 김재로(金在魯, 1682 ~ 1759)는 공주와 옹주가 궐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록(受祿)하지만 출합한 뒤에는 부마에게만 녹을 지급한다고 정리했다.

3) 노비 사여

조선 초기의 출합 등과 관련한 왕자녀에 대한 노비의 사급관행은 조선 후기에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조 때 봉림대군의 사례를 통해 살필 수 있다. 봉림대군은 인조의 둘째아들로 1631년 12세에 장유의 딸[仁宣王后]과 혼인했다. 이 과정에서 인조는 같은 해 2월 28일 『봉림대군봉작상사교지(鳳林大君封爵賞賜敎旨)』를 내리고 수원 등지의 관노비를 하사했다.

봉림대군이 하사받은 노비는 모두 150구로 지방군현과 중앙각사에 산재해 있었다. 지방관 소속으로는 수원, 지평, 공주, 영광, 능주, 순천, 전주, 전라좌수영, 옥과, 고부, 울산, 의성, 안동, 영천(榮川), 김제, 교하, 마전, 양천, 남양, 개성, 경주, 비안, 봉화, 삼척, 원주, 춘천, 안협, 금화, 평강, 강릉, 수안, 안악, 장연, 토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노비는 경기를 비롯하여 삼남지방 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황해도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들 노비 중 지방군현 소속 노비는 총 69구이다. 지방관 소속 관노비는 강릉관의 5구가 가장 많으나 전체적으로 차등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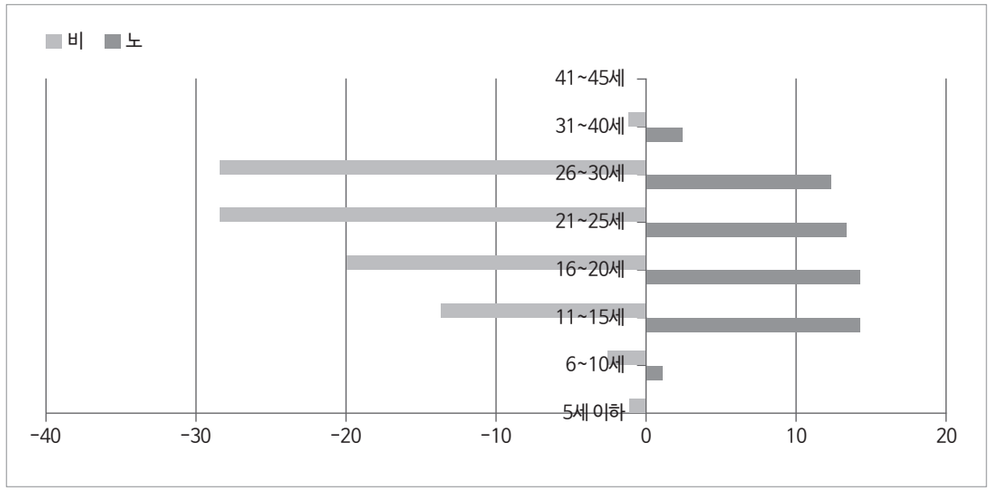
1631년 사급 노비의 지방 군현별 분포 현황

지역	노비	지역	노비	지역	노비	지역	노비	지역	노비
강릉관	5	남양관	1	순천관	1	옥과관	1	지평관	1
개성부관	4	능주관	3	안동관	3	울산관	1	청주관	1
경주관	2	마전관	2	안악관	1	원주관	2	춘천관	1
고부관	1	봉화관	1	안협관	4	의성관	1	토산관	3
공주관	3	비안관	2	양천관	3	인순부	1	평강관	2
교하관	1	삼척관	1	연안관	1	장연관	2	총합	69口
금화관	1	수안관	1	영광관	1	전라좌수영	1		
김제관	1	수원관	2	榮川관	3	전주관	4		

지방관노비 뿐만 아니라 중앙 각사의 노비 81구도 포함되었다. 각사 소속 시노비는 호조와 형조뿐만 아니라 광흥창, 군자감, 군직청, 내섬시, 내자시, 사복시, 사섬시, 사재감, 사육서, 서빙고, 소격서, 예빈시, 장예원, 종친부, 충익부를 포괄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관에 소속된 중앙각사노비도 사여에 포함되었는데, 강화안부 봉상시, 김해안부 사섬시, 남평안부 의빈부, 담양 장예원, 무장안부 장예원, 밀양안부 장예원, 부안안부 장예원, 양덕안부 사섬시, 직산안부 내자시, 진주 군기시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사여된 노비 150구 중 노는 56구이며, 비는 94구로서 비의 비중이 60%높다. 이들 노비 중, 노는 38구가 중앙각사 소속으로 전체 노의 68%, 42구의 비가 또한 중앙각사에 소속으로 전체 비의 45%였다. 사급노비의 나이는 최하 3세에서 최고령이 41세이다. 이들 노비의 연령별 분포현황은 그림과 같다.

연령대별 노비분포 현황



노비의 연령은 41세 미만으로 노동생산성 높은 연령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들 노비 중 16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이 115구로서 전체 노비의 76.7%를 점하고 있다. 이는 노비의 사여에 있어 활용성과 노동생산성을 적극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기 연령대의 비가 76구로서 이 또한 전체 노비의 66.1%인 점을 감안한다면 가임기 여자종의 비중을 높여 장기적인 노비의 재생산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했음을 보여준다.

4) 전지 획급

숙종조에는 궁방의 설치에 있어 출합의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지사 오정위(吳挺緯, 1616~1692)는 출합을 위해 공주들의 전장을 마련하는 데 대해 상신했다.

> 황해도에 내사(內司)가 방죽을 쌓는 것은 비록 내수사의 남자 종을 부려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죽 하나에 부리는 일꾼이 거의 3천이 들어가니 백성들이 어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명선공주와 명혜공주 두 분을 위한 전장(田庄)을 설치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공주는 모두 출합을 하지 못하게 세상을 버렸으니 어찌 전장을 설치해서 쓰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숙종실록』권6, 숙종 3년 4월 정미.)

오정위는 내수사에서 황해도에서 공주들의 출합에 대비한 전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한 불가함을 언급했다. 숙종은 오정위의 의견에 따라 역사를 중지했다. 다만, 왕실에서의 출합 자녀에 대한 각종 기물의 사여에 대해서는 전례에 따라 관행으로 지속했다.

토지의 절수에 대한 제도적 규정은 숙종조 영의정 남구만이 언급한 '절수혁파론(折受革罷論)'에서 언급되었다. 남구만은 궁가(宮家) 및 상사(上司)에 절수하는 일은 조선 초기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었다고 정리했다. 다만, 관전(官田)과 속공지로 편집된 토지에 대한 부분적인 사여가 있었다. 그리고 토지 절수의 출발은 왜란 이후 출합 왕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규례화에 있었다. 결정적으로 선조 때 왕자와 옹주에 대한 출합이 잇따르게 되면서 1601년(선조 34) 호조판서 한응인이 예빈시 등에 소속된 수세지를 획급해 준 것 계기가 되었었다. 이에 따라 왕자녀 출합 관전 수세지를 절수하는 관행이 발생하게 되었다.

절수의 범위가 커진 것은 현종조 5공주의 출합이었다. 이 후 현종과 숙종 때 이러한 관행화를 혁파하려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1680년(숙종6) 현종 때(1672년, 현종 13) 절수된 전지에 대한 혁파 논의가 재발했다. 이후 출합 왕자녀에 대한 절수지 획급 규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숙종은 출합과 절수의 문제는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왕실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고 강행을 표명했다. 이러한 숙종의 입장에 대해 국왕이 사정(私情)에 얽매인다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 명선(明善)과 명혜(明惠) 두 공주가 미처 출합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종께서 그것을 가엾게 여겨 400결을 더 얹어 주었더니 각 궁에 딸린 종[宮屬]들이 여기에 의거해서 지나치고 넘쳐서 절수가 1,000 여 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 직전법으로 정한 방식에서 벗어난 것은 마땅히 혁파 하소서.
> (『숙종실록』권19, 숙종 14년 4월 을축)

국왕의 출합 궁가에 대한 절수에는 사정이 작용하고 있다는 남구만을 비롯한 대신들의 시각이었다. 규정된 이외에 국왕의 개인적 의지로 전지 지급 전례가 관행화 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명선과 명혜 두 공주가 출합하지 못했으므로 출합한 공주보다 절수지가 적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1,000여결에 이른 정황을 이러한 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남구만의 주장에 따라 숙종은 400결 외에는 혁파하도록 했다.

『경국대전』에는 대군과 왕자, 공주와 옹주에 지급되는 직전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대군은 250결(結), 왕자군은 180결을, 공주 및 옹주는 그의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관직에 따라 녹봉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1663년(현종4)에는 수교를 통해 대군에게는 400결, 왕자와 군, 그리고 옹주에게는 250결에 한해서 면세하도록 했다. 숙종조에 있었던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 숙종은 아래와 같이 조정했다.

> 여러 궁가와 후궁은 일찍이 이미 절수한 것 외에 지금 뒤로 곧 모두 절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한다. 앞으로 신궁이 있을 때에는 계(啓) 한데 의거해서 직전법으로 그것을 시행한다. 그리고 어전(漁箭)과 염분(鹽盆) 등 갖가지 절수와 대신 받는 등의 일은 모두 모두 못하게 막아 금지한다. 각 아문과 각 군문 또한 한 결 같이 실제로 행할 일로 일정한 방식[定式]으로 나누어 시키는 것이 좋겠다.
>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4월 무진)

숙종은 추가적인 절수를 지양하며 신궁에 대해서도 직전법에 준한 면세전의 조치를 강구했다. 이러한 논의는 『속대전』에 반영되어 신궁과 구궁에 왕패(王牌)로 사여된 경우에 전결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궁가의 면제전에 대해 원결(元結)에 따라 정하며 다른 토지의 혼입을 금단했다.

5. 연잉군의 살림나기

1) 길일의 택정

왕실의례에 있어 출합은 출합일의 택정에서 시작했다. 출합일은 '길일택정(吉日擇定)' 결과가 예조의 일관(日官)을 통해 상신되었다. 『왕자가례등록』에 의거하여 연잉군이 1712년 출합하기까지 전개 과정이 복잡했다.

『왕자가례등록』 연잉군 출합 논의의 전개

연 도	기사	내용	비 고
1710(숙종36)	9.30	·명년춘간(明年春間) 출합	
1711(숙종37)	1.7	·1711년 2월 12일 택정	
1711(숙종37)	1.14	·가을로 물릴 것 지시	
1711(숙종37)	11.25	·1712년 1월 25일 택정	
1712(숙종38)	1.12	·2월로 물릴 것 지시	
1712(숙종38)	1.16	·2월 12일 출합일 확정	·2.12일 출합

연잉군의 출합 길일은 거듭된 2차례의 연기 끝에 결정되었다. 1710년(숙종 36) 9월 30일의 전교에서 숙종은 연잉군의 출합을 1711년 2월 12일로 정하고 소용되는 기명 등도 사례를 고증하여 거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1711년 겨울에 다시 1712년 봄으로 연기한 후 2월 12일 출합이 확정되었다.

1712년 출합 준비를 위해 도청에 물력 지원이 있었다. 도청에서 소요되는 물력은 초주지 10장, 백지 2권, 황필 2병, 진묵 2정, 공석 10, 입태 등 이었다. 이들은 호조, 병조, 공조, 장흥고, 풍저창, 군자감, 광흥창, 전옥서에서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12월 17일부터 도청은 간(間) 1일 마다 온돌소목 1단, 탄 3승 식을 지원 받았으며, 이 외에 각사로부터 토화로(土火炉) 3좌(坐)도 갖추었다. 연잉군은 1712년 2월 12일 금중(禁中)에서 사제로 나갔다.

> 왕자 연잉군이 대궐 안에서 개인 저택으로 나아갔다. 지난 해 부터 담당 아문[該曹]에서 여러 번 출합 날을 골랐으나 기약된 날에 이르자 왕께서는 문득 다른 날로 물리도록 명령하셔서 이에 이르러 비로소 출합했다.
> (『숙종실록』권51, 숙종 38년 2월 을축)

숙종의 고심 끝에 결국 연잉군의 출합이 이루어 졌다. 1712년 2월 12일 출합 일에 도청 정랑 이만근이 부인출궁(夫人出宮) 때 뒤를 배행하고 따라서 왕자궁을 다녀옴으로서 출합은 완료되었다.

2) 출합궁(出閤宮) 마련

1700년(숙종 26) 숙종은 연잉군이 7세가 되자 가례에 앞서 미리 출합을 위한 제택 마련을 추진했다. 이에 홍문관은 출합궁 마련에 있어 절검을 간언함으로서 왕실에 대한 견제를 도모했다.

> 왕자께서는 아직 어리시어 출합이 아직 멀었는데 새로이 제택을 지어서 큰 길에 높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은 뒤쫓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속을 꽉 채울 자본과 도구를 쓸 비용은 혹시라도 너무 사치하지 못하게 하여 반드시 씀씀이를 아껴서 알맞게 쓰도록 해서 또한 앞장서서 낭지하지 않는 뜻에 맞도록 하십시오.
> (『숙종실록』권34, 숙종 26년 10월 경오)

홍문관은 가례도 치르지 않은 연잉군의 출합을 위한 제택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더불어 출합을 위한 기명의 마련에도 절검이 강조되어야 함을 간언했다. 그리고 영의정 서문중(徐文重, 1634 ~ 1709)은 조종의 전례를 들어 출합하기 전에 제택을 마련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숙종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직언했다.

1704년(숙종30) 2월 연잉군이 관례를 치른 후, 숙종은 왕자의 제택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 왕자는 살림집[第宅]이 있은 뒤라야 출합을 할 수 있다. 연잉군은 길례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오히려 살림집이 없다. 바야흐로 이제 큰 공사가 한창 벌어져서 집을 짓거나 만들기 힘들 듯 하니 이 또한 어쩔 수 없도다. 먼저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값을 대어주어라.
> (『숙종실록』권39, 숙종 30년 4월 병술.)

숙종은 전교를 내려 연잉군의 제택의 조성을 독려했다. 숙종은 궁가(宮家) 조성을 길례를

전후한 시기에 갖추어야 출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잉군의 출합 일정이 정해지자 연잉군의 출합 제택 마련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다. 몇 년 전 연잉군에게 사 준 가사가 사용되지 못하면서 연잉군은 출합이 정해진 뒤 제택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 연잉군에게 몇 해 전 사서 준 가사는 사정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 이제 출합이 이미 정해졌음에도 오히려 살림집[第宅]이 없으니 만들어 주는 것도 쉽지 않고 소용될 비용도 염려스럽다. 마땅히 편한 방법을 따라야 하니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해당 궁에 물어서 합당한 곳을 사서 줄 일이라고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해당 궁에 물어보니 전주부(前主簿) 정계일(鄭繼一)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낭청을 뽑아 보내어 건물 기초[基址]의 집 칸살의 얼기[間架]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건물 기초가 3,539칸이고 가사는 266칸 반 이었습니다. 감고(監考)에게 값을 쳐보게 했더니 은 3,934냥 7전 4푼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로서 사서 주고자 감히 아룁니다.
> (『승정원일기』, 숙종 36년 10월 신미)

숙종은 제택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 조성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호조에서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호조는 전주부 정계일의 제택 매입을 결정하고 감고를 보내어 집터와 가사의 규모, 그리고 매매가격을 정했다. 그러나 결국 연잉군은 1712년 19세가 되어 한성부 북부 의통방(義通坊)의 사저인 창의궁(彰義宮)으로 출합했다. 창의궁은 효종의 넷째 딸 숙휘공주(淑徽公主)와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의 옛집이었는데, 숙종이 연잉군에게 준 것이었다.

출합한 연잉군의 출합 제택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논의 되었다. 형조판서 이언강(李彦綱)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형조와 한성부에서 왕자궁의 소속에 대한 일을 따져 물을[推問]것이 있으면 삼군문과 5상사(五上司)의 예에 의거해서 종친부에 진래공사(進來公事)를 전달하고 잡아 와서 따져 묻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 (『숙종실록』권51, 숙종 38년 5월 을미)

왕자궁의 소속에 대한 추문이 있을 경우 절차에 있어 종친부를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을

언급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군문의 전례를 원용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대사헌 조태동(趙泰東, 1649 ~ 1712)은 왕자가 비록 존귀하지만 출합 한 뒤에는 곧 사가가 되므로 군문의 규례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출합 물력 지원

숙종조 연잉군의 출합은 왕실의 사적 의례에 해당하는 가례와 출합이 공적 영역으로 중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710년(숙종 36) 10월 1일 예조는 연잉군이 출합할 때 필요한 물건에 대해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했다. 소용되는 각 물종은 해사(該司)에 명하여 준비하도록 했으며, 그에 따른 물종은 다음과 같았다.

> 중미(中米) 30석(石), 조미(造米) 60석, 황두(黃豆) 40석, 면포(綿布) 70필(匹), 정포(正布) 70필, 용단칠저족상(龍丹漆低足床) 1죽(竹), 흑칠대·소원반(黑漆大·小圓盤) 각 1죽, 목대원반(木大圓盤) 1죽, 유발(鍮鉢) 2죽 개구(蓋具), 유시(鍮匙) 3단(丹), 유근(鍮筋) 3단, 유이선(鍮耳鐥) 1, 유소(鍮召)2, 유욱아(鍮郁兒) 2죽, 유자평중·소(鍮者平中·小) 각1, 동화목장화로(銅咊木長火爐) 1, 풍혈장화로(風穴長火爐) 1, 자금중·소(炙金中小) 각1, 철화통(鐵火桶) 1, 세족통(洗足桶) 1, 습수통(汲水桶) 2, 주동해(鑄東海) 6, 유주발(鍮周鉢) 2죽, 주중·소증(鑄中小甑) 각1 개구, 목등경(木燈檠) 3, 주사요대·중·소(鑄沙要大·中·小) 각2, 대·중정(大·中鼎) 각1 개구, 소정(小鼎) 2 개구, 화정(火鼎) 1,유개(鍮蓋) 1 지령통개구(之令筒蓋具), 대·중·소부(大·中·小釜) 각1, 두모(豆毛) 대(大)2 중(中)1 대구(臺具), 식도자(食刀子) 2 등

나열된 여러 물종은 연잉군의 출합에 소요되는 곡물, 식자재, 기명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물력과 물종은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했다. 물종은 가례청 도청에서 간품(看品)한 후 본궁[연잉군궁]에 진배했다. 그리고 각사에서는 담당한 물종을 별도로 성책하여 도청에 보내 증빙자료로 삼았다. 담당 각사는 호조, 공조, 제용감, 선공감,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군자감, 장흥고, 평시서, 예빈시, 사재감, 와서, 의영고, 사포서였다. 출합에 호조와 공조를 중심으로 각사는 서로 공조하고, 물력은 동원되고 있었다.

출합에 필요하고 지원하기 위한 물종은 별공작과 시전을 통해 마련되었다. 1710년(숙종 36) 12월 11일, 별공작(別工作)은 간품에 합당한 물품 마련을 위해 충분한 기일을 요청했다. 그 이유는 목물기명의 조작(造作)과 쓰는 물종은 출합궁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상용한다는데 있었다. 또한, 연잉군의 출합에 대한 물종의 마련에 시전이 이용되었다. 12월 11일 평시서에서는 연잉군이 출합할 때 사용되는 채화기명(彩畵器皿) 55죽(竹)을 각전(各廛)에 분정했다. 겨울에 이들 물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전 상인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이 제기된 결과였다.

1712년 2월 12일, 출합당일 소요되는 물종이 보완되었다. 출합 때 소용하는 상문답석(常文踏席) 방석(方席)과 지의(地衣)는 필요한 수만큼 만들어 조치하게 했다. 답석과 지의 납입는 호조와 장흥고에서 20장으로 1부를 만들어 납품하도록 했다. 공조는 주동해(鑄東海) 6개, 대소용 1좌 등은 사용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해사로 하여금 기일에 맞추어 다시 납입하도록 했다.

4) 노비 사급

숙종은 연잉군에게 출합 이전부터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비를 사급했다. 1714년(숙종 40) 연잉군의 한성부 준호구에 '사환노비(使喚奴婢)'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준호구에 의하면 21세의 연잉군은 한성부 북부 의통방 연추문계(延秋門契) 7통 5호의 호수였다.

1712년(숙종 38)년 2월 12일 출합한 연잉군은 노비 21구를 사환하고 있었다. 이들 노비는 노 15구, 비 6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노비 부모의 신분이 기재되어 있다. 모의 신분은 내비(內婢)가 18건이며, 관비 2건과 반비 1건이다. 부는 내노(內奴)가 7건이었으며, 양인 8건, 사노 6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호구에 기재된 연잉군의 노비는 내시노비와 관노비의 소생이 중심이었다. 연잉군 준호구에 기재된 노비의 연령구성은 20대 3구, 30대 7구, 40대 7구, 50대 3구, 60대 1구이다. 이들 노비는 준호구에 명기된 바와 같이 사환노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외거노비의 현황은 알 수 없다.

1717년(숙종 43) 1월 18일 숙종이 아들 연인궁에게 관노비를 내려준 사패교지가 있다. 당시 숙종은 숙빈최씨 상중에 있었음에도 아들 연잉군에게 노비를 사여했다. 노비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삼남지방, 강원도와 황해도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사패교지에는 과천, 무주, 밀양, 비안, 안동, 안악, 양양, 연기, 영광, 원주, 의성, 인제, 장성, 장연, 전주, 춘천, 해주, 황주에 소속된 관노비 각 1구씩 모두 18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 노비의 연령분포는 10대 1구를 비

롯하여 20대 8구, 30대 8구, 40대 1구로, 주로 20 ~ 30대로 노동력으로 활용이 충분한 연령대 노비가 사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비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노는 4구에 불과하며 비가 14구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적인 노비증식과 노동력 활용의 측면이 적극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토지 획급

1719년(숙종 45) 12월에는 경기도의 양주목에 소재한 백석곶면(白石串面)의 우언리(牛堰里)와 광석면(廣石面) 삼고개(三古介)에 있는 연잉군방 매득 전답에 대해 타량하여 작성한 양안이 있다. 백석곶면의 기주, 진주, 가대주는 막산(莫山), 견이(堅伊), 논복(論卜), 신남(申男), 남미(男伊)였으며, 광석면은 기주로 노 막동(莫同)만 확인된다. 백석곶면의 우언리의 기전은 2결 24부 6속, 가대전이 4부3속, 진전은 3부 9속이다. 광석면의 삼고개는 기전 9복 6속이다. 도이상(都已上)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답은 2결 33부 4속이며, 전은 1결 63부 3속, 답은 70북 1속이었다.

1720년(숙종46) 11월 함경도 영흥부 정변사(正邊社) 필인포(弼仁浦), 평호(平湖)일대에 소재한 연잉군방 매득전에 대해 영흥부에서 타량하여 성책한 양안이 있다. 영흥부에서 연잉군방의 전답에 대한 타량을 실시하게 된 것은 1720년 호조에서 함경도 순영에 관분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영흥부에서 연잉군방에서 매득한 논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보고하게 되었다. 전의 소재는 영흥부의 전변사에 소재한 필인포와 평호였다.

전답의 성격과 구성

구분	기전(起田)	진전(陳田)	합계
필인포(弼仁浦)	113.0	236.1	349.1
평호(平湖)	447.6	710.1	1,157.7
합계	560.6	946.2	1,506.8

필인포의 경우 기시(起時)와 진시(陳時) 모두 김상국(金尙國)이었다. 평호는 기시와 진시에 대해 김상국, 조천석(趙千石), 함귀찬(咸貴贊), 정건(鄭巾), 박익경(朴益京)이었다. 이들이 경작, 관리하는 田의 성격별 현황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영흥부 소속 연잉군방 매득전에 대

해 1720년의 운영 실태는 전체 15결 6부 8속에 대해 진전이 9결 46부 2속, 기전이 5결 60부 6속이었다. 이 중 필인포가 3결 49부 1속이며, 평호가 11결 57부 7속이었다. 이들 전의 경우 진전은 필인포의 진전 1결 53부 1속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규모의 전이 진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